우리나라와 BIS, 美國 및 日本의 金融機關에 대한 資本規制

1997. 6.

崔 長 鳳
賈 坰 洙

Kipf 한국조세연구원

序　　言

금융기관의 自律化·國際化에 따라 세계적으로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이에 따른 危險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금융기관의 위험 증가로 인하여 金融制度의 安定性이 크게 위협받음에 따라 각국마다 금융제도의 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은행 등 금융기관의 健全監督을 위한 資本規制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資本規制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시켜 금융기관 도산의 否定的 外部效果를 방지하는 등의 효과를 갖는 반면 시장규율에 의한 필요자본의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資金調達費用을 높임으로써 결국 금융기능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에 따라 자본규제는 금융기관 도산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방지하는 限界收益과 금융기관의 금융기능을 위축시키는 限界費用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 本 硏究院은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현행 자본규제와 주요 선진국의 자본규제에 관한 비교분석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BIS, 美國 및 日本의 金融機關에 대한 資本規制』를 발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규제의 이론을 第I章에서 설명하였으며 第II章에서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자본규제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외국 금융기관의 자본규제에 대한 사례로서 BIS와 미국 및 일본의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규제를 第III章에서 정리하였다.

本 報告書가 금융기관의 자본규제에 관한 정책수립에 중요한 참

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本 報告書는 預金保險公社의 崔長鳳 調査分析室長이 본 연구원에 재직할 당시 일부 집필하였으며 預金保險公社의 賈坰洙씨와 함께 완성한 것으로서 著者들의 勞苦에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本 報告書의 내용은 著者 個人의 意見이며 本 硏究院의 공식적인 見解와는 무관함을 밝힌다.

1997年 6月

韓國租稅硏究院

院長 崔 洸

目　次

Ⅰ. 金融機關에 대한 資本規制의 槪觀 …… 9

1. 資本充實 …… 9

2. 市場規律에 의한 資本 …… 9

3. 政府規制에 의한 資本 …… 13

4. 資本規制의 內容 …… 14

5. 資本規制의 影響 …… 17

Ⅱ. 우리나라 金融機關의 資本規制 …… 19

1. 銀行 …… 19

2. 相互信用金庫 …… 35

3. 證券會社 …… 37

4. 投資信託會社 …… 46

5. 綜合金融會社 …… 47

6. 保險會社 …… 49

Ⅲ. 金融機關에 대한 資本規制의 外國事例 …… 52

1. BIS와 IOSCO …… 52

2. 美國 …… 78

3. 日本 …… 93

〈參考文獻〉 …… 123

表 目 次

〈表 1〉 銀行의 自己資本 構成項目 ····· 21
〈表 2〉 銀行 貸借對照表 資産의 危險加重値 ····· 24
〈表 3〉 銀行 帳簿外項目의 信用換算率 ····· 27
〈表 4〉 銀行의 外國換 및 金利關聯 帳簿外去來의 信用換算率 ··· 28
〈表 5〉 證券會社의 債券포지션 危險加重値 ····· 40
〈表 6〉 證券會社의 株式포지션 危險加重値 ····· 40
〈表 7〉 證券會社의 收益證券포지션 危險加重値 ····· 41
〈表 8〉 證券會社의 派生商品 信用換算率 ····· 42
〈表 9〉 證券會社의 去來相對方 危險加重値 ····· 42
〈表 10〉 BIS의 資産別 危險加重値 ····· 56
〈表 11〉 BIS의 負債性 有價證券에 대한 特定危險對比 資本의
加重値 ····· 61
〈表 12〉 BIS의 滿期方式의 滿期區分과 危險加重値 ····· 62
〈表 13〉 BIS의 水平的 相計不許比率 ····· 63
〈表 14〉 BIS의 加重平均滿期方式의 期間區分과 收益率變化
假定値 ····· 64
〈表 15〉 BIS의 金利關聯 派生金融商品의 市場危險 ····· 65
〈表 16〉 BIS의 商品危險에 대한 時間基準帶別 加重値 ····· 69
〈表 17〉 BIS의 감마危險對比 危險加重値 ····· 72
〈表 18〉 美國 銀行의 自己資本 構成項目 ····· 79
〈表 19〉 美國 銀行의 資本充實度 區分 ····· 80
〈表 20〉 美國 監督當局의 早期是正措置 內容 ····· 81
〈表 21〉 美國 證券會社의 政府證券 評價損 比率 ····· 84

〈表 22〉 美國 證券會社의 轉換不可 會社債 評價損 比率 ····· 85
〈表 23〉 美國 生命保險會社의 主要資產에 대한 資產危險
比重値 ····· 88
〈表 24〉 美國 生命保險會社의 主要資本에 대한 比重値 ····· 90
〈表 25〉 美國 損害保險會社의 主要資產에 대한 資產危險
比重値 ····· 92
〈表 26〉 日本 銀行의 資產別 危險加重値 ····· 95
〈表 27〉 日本 銀行의 帳簿外去來 信用換算率 ····· 98
〈表 28〉 日本의 時價露出方式 基準 ····· 100
〈表 29〉 日本의 原價露出方式 基準 ····· 100
〈表 30〉 日本 證券會社의 엔貨 表示 債券去來의 市場
危險加重値 ····· 104
〈表 31〉 日本 證券會社의 OECD 國家 通貨表示 債券去來의
市場 危險加重値 ····· 106
〈表 32〉 日本 證券會社의 去來資產 및 特性에 따른
市場 危險加重値 ····· 107
〈表 33〉 日本 證券會社의 殘存期間에 따른 去來相對方
危險加重値 ····· 109
〈表 34〉 日本 證券會社의 去來相對에 따른 去來相對方
危險加重値 ····· 110
〈表 35〉 日本 證券會社의 原契約期間에 따른 去來相對方
危險加重値 ····· 111
〈表 36〉 日本 保險會社의 支給餘力 總額 基準 ····· 114
〈表 37〉 日本 生命保險會社의 保險危險 計數 ····· 114
〈表 38〉 日本 損害保險會社의 一般保險危險 計數 ····· 115
〈表 39〉 日本 損害保險會社의 巨大災害危險 ····· 116
〈表 40〉 日本 保險會社의 豫定利率 危險加重値 ····· 117
〈表 41〉 日本 保險會社의 價格變動 등의 危險加重値 ····· 117

〈表 42〉 日本 保險會社의 信用危險加重値 ····· 118
〈表 43〉 日本 保險會社의 信用等級 區分 ····· 118
〈表 44〉 日本 保險會社의 關聯會社 危險加重値 ····· 119
〈表 45〉 日本 保險會社의 先物去來 危險加重値 ····· 120
〈表 46〉 日本 保險會社의 옵션去來 危險加重値 ····· 121
〈表 47〉 日本 保險會社의 스왑去來 등의 危險加重値 ····· 122

Ⅰ. 金融機關에 대한 資本規制의 槪觀

1. 資本充實

금융기관의 資本은 예수금 및 다른 부채와 같이 資金調達의 한 수단이다. 뿐만 아니라 신용위험, 시장위험 등으로 인한 도산위험으로부터 금융기관 자체와 채권자 및 규제당국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자본은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흡수함으로써 金融機關의 倒産을 방지하며 이로부터 예금자 등 채권자, 납세자 등의 손실을 최소화한다.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닌 金融機關의 資本에 대한 規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資本充實(capital adequacy)'이다. 資本充實이란 금융기관의 도산가능성이 적정 수준에서 억제되고 이로부터 채권자, 납세자 등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을 정도로 자본보유 수준이 충실한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자본규제는 금융기관에게 자본충실이 충족되는 자본을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市場規律에 의한 資本

가. MM假說

일반적으로 資本에 대한 기본이론은 MM假說에 기반을 두고 있다. MM假說이란 「모디글리아니」(Modigliani)와 「밀러」(Miller)가 1958년에 企業의 資本構造에 대해 주장한 것으로 "모든 정보가 제

공되는 完全市場에서는 企業의 資本構造는 기업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이 가설에 따르면 기업의 市場價値 變化에 의해 기업의 자본 또는 부채의 선택에 의한 자금조달 비용의 변화가 中和되게 된다(arbitrage arguments). 부채비율이 높은 경우에 주주의 위험도 높아져 자본비용이 증가함으로써 부채증가에 의한 자금조달 비용의 감소효과는 상쇄되어 加重平均 資金調達費用은 일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이는 자본에 의한 자금조달과 부채에 의한 자금조달은 기업가치에 변화를 주지 못함을 의미한다.

MM假說은 完全市場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금융기관에는 조세(taxes), 금융위축비용(costs of financial distress), 거래비용(transactions costs), 비대칭 정보(asymmetric information), 규제(regulation) 등의 불완전시장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자본은 부채와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된다:

나. 金融機關의 資本 必要性

불완전한 금융시장에서는 금융기관은 市場規律에 의한 자본을 필요로 하게 된다. 市場規律에 의한 必要資本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는 존재하지만 직접적인 자본규제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금융기관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자본으로 정의될 수 있다. 시장규율에 의한 금융기관의 자본 필요성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金融機關은 租稅制度와 金融萎縮 現象 때문에 자본을 필요로 한다.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는 데 반해 배당금은 그렇지 못하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자본보다 부채에 의한 자금조달 비용이 낮아 기업주(금융기관 포함)는 負債에 의한 資金調達을 選好하게 된다.

그러나 부채비율이 높아지면 기업(금융기관 포함)은 資金調達力이 떨어지는 금융위축 현상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金融萎縮 現象은 일반인이 금융기관의

계약이행 능력을 신뢰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금융위축 현상이 발생하면 우수한 직원이 사직하고 거래자는 가능한 한 빨리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며 신용위험에 관련된 거래를 기피한다. 또한 주주와 채권자간의 이해상충으로 인하여 영업, 투자 및 자금 조달·운용이 최적 상태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일반적인 經濟萎縮 現象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負債比率이 높은 금융기관은 파산 위험이 높아지고 계약이행의 불확실성도 높아지며 주주와 채권자간 이해상충 조정이 더욱 어려워지는 등 추가적인 金融萎縮 費用을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주는 부채증가에 의한 租稅上의 利益과 金融萎縮上의 不利益을 고려하여 필요자본의 적정 수준을 결정한다.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가 과세소득에서 공제됨에 따라 조세제도 측면에서는 부채가 선호되지만, 부채 증가에 따른 위험이 금융위축 현상으로 주주에게 전가되는 효과가 초래되므로 주주는 적정 수준에서 자본금을 증대하여 금융위축으로 인한 비용을 줄이고자 한다. 즉 租稅制度에 의해서는 시장규율에 의한 필요자본이 감소하지만 金融萎縮의 費用이 증가하면 시장규율에 의한 필요자본이 증가한다.

둘째, 情報의 非對稱性과 去來費用 때문에도 금융기관은 자본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금융거래자간에 정보가 비대칭적인 것이 일반적이다. 정보력의 비교 우위는 金融市場에서의 資金 調達·運用過程에서 드러날 수 있으므로 정보력이 비교 열위에 있는 금융기관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금융기관의 필요자본이 적을 수 있다.

한편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등기 자료, 내용 설명서, 등기 수수료, 인쇄·우송 비용, 인수 수수료, 발행비용 등의 거래비용이 수반되므로 부채보다 자본에 의한 자금조달 거래비용이 높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특히 小型 金融機關은 去來費用이 낮은 負債를 資本보다 선호한다. 반면에 주식발행 비용이 높으므로 자본이 낮을 경우의 금융위축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은 오히려 어느 정도의 여유 있는 자

본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또한 株主와 債權者간에도 情報의 非對稱性이 존재한다. 주주가 채권자보다 금융기관의 가치에 대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보유함에 따라 주주는 위험이 높은 자산을 선택하는 도덕적 위험(moral hazard)에 빠질 수 있다. 더욱이 주주는 금융기관이 도산에 임박할 경우 높은 투자수익이 확실함에도 그 투자수익의 대부분이 채권자에게로 귀착되므로 자본에 의한 투자를 기피하여 영업을 지속하고자 한다. 그 밖에 株主는 不實資産을 低評價하며 장부가치보다 시장가치가 높은 자산을 처분하는 반면 시장가치가 장부가치보다 낮은 자산을 유지하는 등의 조작이 가능하다.

채권자는 이러한 주주의 행태, 즉 代理人 問題(agency problems)를 예상하고 부채에 높은 이자를 요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자본을 증대하여 주주와 채권자가 동일한 利害에 있음을 보임으로써 주주와 채권자간의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즉 情報의 非對稱性으로 인한 주주와 채권자간의 대리인 문제 때문에 시장규율에 의한 금융기관의 필요자본이 증가한다. 반면에 주주는 경영자를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어 주주와 경영자간에도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므로 주주는 자본을 줄이려는 유인이 있다.

셋째, 金融制度 安全을 위한 장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자본을 줄이려는 경향이 있다. 금융의 특성상 금융시장에는 금융제도의 안전을 위한 안전장치가 형성되어 있다. 금융제도의 안전을 위한 장치로는 資本規制 외에 預金保護制度, 支給保證制度, 再割引制度, 監督制度 등이 있다. 금융제도 안전을 위한 장치 중 자본규제를 제외할 경우 이들 장치는 금융기관의 자본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금융제도의 안전장치는 개별 금융기관에게 일종의 보조금 역할을 하므로 자본비율을 낮추도록 유도한다. 금융제도의 안전장치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시장규율에 의한 금융기관의 자본비율이 비금융기관보다 낮다.

이에 대한 美國 銀行의 例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은행의 자산에 대한 자본비율 추이를 보면, 1863년 국립은행법의 제정, 1914년 연방준비제도(중앙은행)의 설립, 1933년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설립 등으로 금융제도의 안전장치가 형성되어 금융기관의 도산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50% 이상에 이르렀던 자본비율이 점차 낮아져 1940년대 초기 이후에는 6~8% 수준으로 대폭 하락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1년 연방예금보험공사개선법(FDICIA)의 제정에 의하여 危險加重資本(risk-based capital)制度와 早期是正措置(prompt corrective action)가 도입되어 금융제도 안전장치의 문제점이 개선됨에 따라 자본비율이 다시 1989년의 6.21%에서 8%대로 상승하였다.

3. 政府規制에 의한 資本

가. 資本에 대한 政府規制의 必要性

중앙은행, 예금보호기구, 납세자 등의 대리인인 규제당국은 일차적으로 일반 채권자와 같은 입장이다. 일반 채권자의 입장에서 규제당국은 金融萎縮, 代理人 問題, 金融制度 安全裝置 등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에서 資本을 보유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한편 금융기관의 도산은 시스템 위험을 초래하는 外部效果를 갖는다. 즉 특정 금융기관의 도산은 연쇄적으로 건전한 금융기관의 도산을 유발할 수 있고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도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차입자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하며 금융시장 내에 지급결제가 원활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효과적인 통화정책의 실시를 어렵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규제당국은 金融機關의 健全性을 위해 자본을 규제한다.

예금보호를 위한 보험료, 예금보호의 취소, 영업정지 명령, 파산선언, 자산 및 자금조달 제한, 배당제한 등 金融制度의 安全裝置는

금융기관의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도덕적 위험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당국은 자본의 증대를 요구하게 된다.

나. 市場規律과 規制當局이 요구하는 必要資本規模의 差異

市場規律에 의한 必要資本과 規制當局이 요구하는 必要資本은 규모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금융기관 도산의 부정적인 外部效果 등으로 인하여 규제당국의 입장에서 필요한 자본이 시장규율에 의한 필요자본에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시장규율에 의하여 필요로 하는 자본을 초과하여 규제당국이 필요자본을 요구하는 타당성을 제공한다.

4. 資本規制의 內容

가. 資本의 規制

資本規制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여 금융기관 도산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방지하는 등의 효과를 갖는다. 한편 시장규율에 의한 필요자본의 수준을 초과하는 자본은 금융기관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加重 資金調達費用을 높임으로써 결국 금융기능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이에 따라 자본규제는 금융기관 도산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방지하는 限界收益과 금융기관의 금융기능을 위축시키는 限界費用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限界費用은 각 금융기관 및 매시각에 따라 다를 것이다. 자본규제를 금융기관 및 시각마다 차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것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므로 현실적인 방안이 되지 못한다. 이에 따라 규제당국은 일정기간 동안 동일한 最低 資本水準을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 規制對象 資本의 種類

자본은 그 청구권이 보호예금의 청구권보다 하위에 있고 상환 대상이 아니며 金融機關의 道德的 危險을 감소시키는 특성을 지닌다. 이와 같은 자본의 특성을 기준으로 할 때 규제대상이 되는 자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먼저 株式(equity) 發行에 의한 資本으로서 이 주식자본은 예금보호기구의 보호대상 예금의 청구권보다 하위에 있고 상환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주식자본이 반드시 도덕적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보장은 없다. 다만 경험적으로 株式資本의 比率이 높은 금융기관의 도산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後順位負債(subordinated debt)도 그 청구권이 주식 이외의 청구권보다 하위에 있고 신속히 상환받기 어려우며 그 소유주가 경영위험을 감시하는 등 대체로 자본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 밖에 유통시장에서 결정되는 後順位負債의 가격은 발행 금융기관의 경영위험을 나타내는 기준이 될 수 있다.

한편 預金保護機構의 보호대상이 아닌 예금은 그 청구권이 보호예금의 청구권보다 하위에 있는 등 자본의 특성을 일부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비보호예금은 연쇄예금인출의 원인이 되어 금융제도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보호대상이 아닌 예금은 자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 規制資本의 價値測定

규제대상의 자본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株式資本은 債券 및 有形·無形資産의 價値에서 채무의 가치를 제외하여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주식자본의 가치는 금융기관의 모든 금융수단 및 자산의 價値가 어떻게 측정되느냐에 달려 있게 된다.

금융기관의 금융수단 및 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이 완벽하게 형성되어 있으면 주식자본 가치의 측정은 용이할 것이다. 그러나 株式市場에서 형성된 株式價値는 賣買 등에 제약이 있는 부채의 가치, 자산을 채권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 선택권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규제목적'에 비추어 주식자본 가치로서 적절하지 못하다.

또한 장부에 의한 주식가치도 대체로 時價를 반영하지 못하고 歷史的 費用에 기준을 두어 장부상의 자산 및 부채를 측정하며 대부분의 帳簿外去來는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株式資本價値로서 적절하지 못하다. 장부상의 주식가치는 채권자의 부담을 초래하지 않고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능력과 도덕적 위험에 대한 제약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實價値의 변화는 없이 보고상으로만 주식가치가 증대될 수 있도록 資產再評價 등의 대상이 되기 쉽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모든 자산·부채가 완전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의 대출 및 지급보증은 情報의 非對稱性下에서 거래자에 대한 상대적인 정보의 우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도산된 금융기관의 대출 및 지급보증은 시장에서 내재된 가치로 평가되지 못하고 저평가된다.

규제의 관점에서 자본은 金融機關의 모든 資產·負債를 市場價値로 평가하여 측정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有價證券 등 시장가치에 의한 평가가 가능한 부문만 시장가치로 평가하는 '部分市場價値 評價方式'과 시장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관련정보를 '公示하는 方式' 등이 규제자본의 측정시에 운용되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資本의 充實度는 결국 자본이 금융기관의 위험노출을 흡수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므로 자본을 규제하는 기준은 金融機關의 總 危險露出에 대한 資本의 比率이 타당한 指標가 된다. 금융기관의 총 위험노출은 純資產의 變動性과 관련이 있으며 총 위험노출이 높을수록 많은 자본이 요구된다. 금융기관의 총 위

험노출은 장부외자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에 자산별 위험도를 가중치로 조정한 危險加重資産으로 측정될 수 있다. 이때 위험가중치는 채무자, 금융수단 등의 특성 및 상황에 따라 차이를 둔다.

그러나 금융기관 경영자는 위험노출이 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작에 의하여 위험가중자산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고 危險加重資産은 實際 危險露出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총 위험노출을 측정하는 새로운 방식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자본과 총 위험노출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점을 보완하는 한 방안은 自己資本(株式)에 대한 最低 基準을 설정하고 後順位債 등의 他人資本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설정하는 등 다수의 資本比率을 規制하는 것이다.

5. 資本規制의 影響

자본가치의 정확한 측정이 어렵고 금융기관의 위험노출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規制當局은 市場規律에 의한 필요자본보다 적정수준 이상으로 必要規制資本을 높게 책정하기 쉬우며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금융중개 규모가 축소된다.

이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은 자본규제 외에 後順位債 發行, 擔保, 債權者와의 共同責任, 再保險 등 위험을 거래자와 공동으로 부담하여 민간의 감시기능 확대를 통한 시장의 규율을 강화하는 방식이 있다. 또한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이 短期 國公債 등 유동성과 안전성을 지닌 자산 또는 정보가 완전한 시장에서 거래되어 시장가치의 측정이 가능한 자산으로 한정하는 방식 등이 있다. 이로부터 시장규율에 의한 필요자본과 규제에 의한 필요자본의 차이가 축소될 수 있다.

또한 規制當局이 必要資本을 책정하여 규제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자본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험적으로 규제당국의 자본

규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금융기관은 장부외거래상의 보증, 대출채권 등의 證券化를 추진하여 규제당국에 의한 필요자본의 규모를 줄이고자 함에 따라 규제당국에 의한 資本規制는 證券化(securitization)現象을 초래하였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그 주장은 경험적으로 검증되지는 못하였다. 한편 帳簿外去來에 의하여 오히려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현상도 발생하였다.

그 밖에 자본비율이 정확하게 측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규제당국은 資本規制를 책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책정된 資本規制로 인하여 非效率的으로 金融機關의 資産이 구성될 가능성도 있다.

II. 우리나라 金融機關의 資本規制

1. 銀行

가. 現況

1) 經營指導基準에 의한 自己資本比率 遵守

經營指導基準은 은행감독원이 금융기관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놓은 것이다. 이 기준상의 自己資本比率은 銀行의 淸算能力(solvency)을 유지함으로써 은행의 계속성을 보장하고 예금자보호라는 공공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설정된 건전성 비율의 대표적인 지표이다.

銀行監督院에서는 1988년에 제정된 BIS기준의 자기자본비율 규제와 같은 방식인 '危險加重資産에 대한 自己資本比率' 규제 방식을 경영지도기준으로 도입하여 은행에게 위험가중자산에 대하여 100분의 8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게 하였다(「금융기관 감독규정」 제19조 제1항). BIS基準 自己資本比率 規制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 및 국제업무를 영위하는 은행간 경쟁 조건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1988년에 國際決濟銀行(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BIS)의 銀行規制監督委員會(바젤위원회)가 「自己資本 測定과 基準에 관한 國際的 合意」를 제정함으로써 설정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은행법 개정으로 은행은 금융자율화와 개방화에 상응하는 건전경영 유지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은행감독원에서도 은행의 자기자본 충실화, 적정 유동성 확보, 고위험자산의 방만한 팽창 억제 등 은행의 건전경영 유도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2년에 BIS 方式의 自己資本比率 規制 基準이 채택되었다.

BIS기준이 채택된 것은 BIS기준이 BIS회원국 등 선진국에서 자국의 국제금융업무와 관련된 외국은행에 대해 강제적으로 적용될 것이고, 국내금융기관에 있어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信認度 提高 및 經營危險의 效率的 管理, 銀行監督面의 國際協力 強化 등을 위해 필요하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금융자율화 확대시 은행의 위험이 높은 업무의 확대 및 장부외거래 증가 등에 따른 銀行 經營의 健全性 惡化 現象을 豫防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危險加重 自己資本比率에 의한 規制方式은 기존의 자기자본비율(gearing ratio,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 규제방식과 비교해서 다음과 같은 特徵이 있다. 이 방식은 위험가중자산에 대하여 자기자본비율을 규제함으로써 은행 자산의 신용도에 따라 자기자본 보유의무를 차별화하여 은행들의 우량자산 보유 동기를 높이며 帳簿外 去來(off-balance)를 포함시켜 규제함으로써 장부외거래의 특징과 위험도도 반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連結基準에 의해 규제함으로써 은행의 본지점과 더불어 자회사의 업무도 포함하여 자본이 규제되는 특징이 있다.

危險加重 自己資本比率 算式은 다음과 같다.

$$\text{위험가중 자기자본비율} = \frac{\text{자기자본}}{\text{위험가중자산}} \times 100$$

$$= \frac{\text{기본자본} + \text{보완자본} - \text{공제항목}}{\sum(\text{연결})\text{대차대조표자산} \times \text{위험가중치}) + \sum(\text{장부외항목} \times \text{신용환산율} \times \text{위험가중치})} \times 100$$

(자료 : 은행감독원, 「금융기관 감독업무 시행세칙」)

自己資本은 은행을 淸算에 이르게 하지 않고 영업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는 不特定 損失의 補塡에 충당할 수 있는 자금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기자본은 基本

資本(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연결자회사의 외부주주지분 등)과 補完資本(재평가적립금, 유가증권평가익, 대손충당금 등)에서 營業權이나 連結調整差 등을 공제하여 결정된다(〈表 1〉 참조).

대차대조표 내의 자산인 경우의 危險加重資産은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채권의 만기, 담보 및 보증유무에 따라 위험가중치에 차이를 두어 계산된다. 위험가중치를 위험도에 따라 0, 10, 20, 50, 100%로 구분하여 이를 해당 자산에 곱하여 위험가중자산이 산출된다(〈表 2〉 참조).

〈表 1〉 銀行의 自己資本 構成項目

	구 성 항 목	관 련 사 항
기 본 자 본	납입자본금	— 보통주, 우선주, 후배주, 혼합주, 상환주, 전환주[1]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 특정자산관련 충당금과 유사한 성격이므로 신탁계정 특별유보금, 해외투자손실준비금 중 외화투자유가증권 평가손 관련분은 제외
	연결자회사의 외부주주 지분	— 종속회사 자본 중 지배회사에 속하지 않는 여타 주주의 지분은 조달방식에 있어 주식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연결기준 회계처리방식에서 하나의 실체로 인정되고 자회사의 위험자산에 대한 위험부담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므로 기본자본으로 인정
	연결조정대(차)	— 상계 결과 연결조정대로 나타나면 자기자본에 가산, 반대로 연결조정차로 나타나면 자기자본에서 공제
	공제항목	— 영업권, 자기주식

〈表 1〉의 **繼續**

	구 성 항 목	관 련 사 항
보 완 자 본	재평가적립금	– 연결B/S상의 재평가적립금이며 각주의 미지급 재평가세는 차감
	유가증권평가익	– 「금융기관 경영지도에 관한 규정 시행절차」 제6조에 따라 유가증권을 원칙적으로 총계기준 저가방식으로 평가하고 은행계정 보유분과 자회사 보유분을 합산한 총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평가하여 평가익발생분의 45%까지 보완자본으로 인정
	대손충당금	– 위험가중자산의 1.25%(1995년 이전에는 1.5%)까지만을 인정
	증권거래준비금	– 연결 B/S상 은행의 대손충당금과는 사용목적이 다르나 증권회사의 고유업무인 '증권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익의 일부를 적립한 것이므로 은행의 대손충당금을 보완자본으로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자기자본(보완자본)으로 인정
	채권상각준비금 (신탁계정)	– 신탁계정 자체로만 볼 때는 대손충당금과 동일한 성격이나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신탁계정은 은행계정의 단일 거래상대방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특정자산 관련 충당금에 해당되므로 자기자본에서 제외
	감가상각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유가증권평가 충당금	– 특정 손실이나 목적에 따른 충당금이므로 보완자본으로 인정치 않음
	부채성 자본조달 수단	– 누적적 우선주, 상환의 선택권이 회사측에 있는 수의 상환주

〈表 1〉의 繼續

	구 성 항 목	관 련 사 항
보 완 자 본	기한부 후순위채	– 우리나라 은행은 금융채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시한부 후순위채 발행이 불가
	비공표준비금	– 회계상 확립된 개념이 아니며 부정의 원인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의 공공성에도 배치되므로 인정치 않음
공 제 항 목	금융업을 영위하는 비연결자회사에 대한 출자금	– 금융제도 내에서 동일한 자기자본이 복수회사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주식의 20/100 이상 50/100 이하 소유시)
	타은행 발행 자본조달 수단	– 자기자본에서 공제하지 않는 경우 위험가중자산에 포함

註 : 1) 우선주, 상환주 및 전환주는 조건에 따라 기본자본 또는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보통주와 우선주만이 발행되고 있다.

資料 :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帳簿外資産인 경우는 신용환산율에 의해 환산된 금액에 해당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산출된다. 이때 외국환 및 금리관련 거래의 信用換算은 時價露出(current exposure)方式을 원칙으로 하되 거래규모가 작은 경우는 原價露出(original exposure)方式의 채택이 가능하다(〈表 3〉 및 〈表 4〉 참조).

連結貸借對照表는 연결회사 상호간의 투자계정과 자본계정 및 채권과 채무를 相計 除去하여 작성된다. 그리고 공고용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연결재무제표기준」상 연결대차대조표 작성관련 항목인 연결조정계정, 외부주주지분 등이 추가된다.

〈表 2〉 銀行 貸借對照表 資產의 危險加重値

가중치	자 산 내 용	계정과목 예시
0%	1. 보유하거나 수송중인 현금(외국통화,금(金) 포함)	— 통화, 외국통화, 타행간 송금, 귀금속
	2. 제1군 국가[1]의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에 대한 채권, 그 기관의 보증 또는 그 기관 채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 한국은행에 대한 채권 • 예치금 : 지준, 통안계정, 국민투자기금, 기타 중 일부 • 대리점 : 국고, 국채, 국민투자기금, 재형저축 • 對韓銀 RP 매수 등 — 한국은행 및 정부관련 유가증권 • 통안증권, 재정증권, 국채, 정부보증채 — OECD 국가의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 관련 채권 • 외화자산(외화대출, 외화예치금, 외화증권, 역외자산) 중 관련 채권
	3. 제2군 국가[2]의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에 대한 현지통화 표시 채권(다만, 현지통화 표시채무 범위 내에 한함)	— 외화자산(외화대출, 외화예치금, 외화증권, 역외자산) 중 관련 채권
	4. 자행예금에 의해 담보된 채권	— 대출금 중 일부 : 적립담보대출, 재형저축자금대출 중 관련 채권, 기타대출금 중 관련 채권 — 팩토링업무와 관련된 외상채권
10%	5. 국내 공공기관에 대한 채권과 그 기관에 의해 보증된 채권	— 원화(외화)대출금 중 관련 채권 — 지방채 등

〈表 2〉의 繼續

가중치	자 산 내 용	계정과목 예시
20%	6. 제1군 국가의 은행에 대한 채권과 해당국 은행에 의해 보증된 채권	– 국내은행 관련채권 • 대출금 중 관련채권 • 콜론(비은행콜론 제외) • 환매조건부채권매수(비은행발행분 제외) • 기타예치금 중 은행CD인수분 등
	7. 제2군 국가의 은행에 대한 잔존만기 1년 이내의 채권과 해당국 은행의 보증을 받은 잔존만기 1년 이내의 대출	– 외화자산(외화대출, 외화예치금, 외화증권, 역외자산) 중 관련채권
	8. 국제개발은행(IBRD, IADB, AsDB, AfDB, EIB)에 대한 채권과 해당 은행의 보증 또는 해당 은행 채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 외화자산(외화대출, 외화예치금, 외화증권, 역외자산) 중 관련채권
	9. 제1군 국가(한국 제외)의 공공부문(중앙정부 제외)에 대한 채권과 해당 은행의 보증 또는 해당 은행 채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 외화자산(외화대출, 외화예치금, 외화증권, 역외자산) 중 관련채권
	10. 추심 과정에 있는 현금항목	– 타점권 – 내국신용장어음매입 – 매입외환(L/C발행에 의한 환어음 매입 경우) – 미결제환대 – 본지점계정 등

〈表 2〉의 繼續

가중치	자 산 내 용	계정과목 예시
50%	11. 주거용 주택(소유 또는 임대)에 대한 저당권 설정으로 전액 담보된 대출	– 근로자주택자금대출, 직원주택대여금 및 가계자금대출금 중 관련 대출
100%	12. 상기 이외의 채권 및 자산 • 민간부문에 대한 채권 • 제2군 국가의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에 대한 채권(현지통화 표시채권 제외) • 업무용 및 비업무용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 타은행이 발행한 자본조달수단(자기자본으로부터 공제하지 않은 경우) • 기타 모든 채권 및 자산	– 대출금(민간대출금, 내국수입유산스, 지급보증대지급금 등) – 유가증권(사채, 주식 등) – 고정자산 – 기타자산 등

註 : 1) 제1군 국가는 한국을 비롯한 OECD 국가 및 IMF의 일반차입협정(General Arrangements to Borrow) 국가임(현재 OECD 국가 29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30개국).

2) 제2군 국가는 제1군 국가 이외의 여타 국가임.

資料 :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連結對象 子會社는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連結財務諸表基準」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실질지배력을 갖는 경우, 즉 발행 총수의 30%를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와 대여·담보제공 및 지급보증액의 합계액이 지배회사의 자본금의 30% 이상이거나 피지배회사의 자본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참고로 은행법이 정한 자회사는 지분율이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금융기관 또는 타주식회사를 말한다.

연결대상에서 제외되는 자회사가 있다. 이들 자회사는 종속회사의 업종이 지배회사와 현저히 달라 재무보고의 통일을 기할 수 없는 경우, 連結對象業種에 속하더라도 連結財務諸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小規模의 會社(證券管理委員會 例規에 의하면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 총액이 60억원 미만인 자회사)와 회사정리절차나 청산, 파산 등의 이유로 연결재무제표의 경제적 실효가 없는 경우이다.

〈表 3〉 銀行 帳簿外項目의 信用換算率

환산율	항 목	계정과목 예시
100%	1. 일반 채무보증 및 인수(인수성격의 배서 포함) 등 직접적인 신용대체수단	– B/S상 지급보증대손충당금 중 관련부분(어음인수, 사채지급보증, 융자담보지급보증, 차관인수 등)
50%	2. 특정거래와 관련된 우발채무(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특정거래관련 보증신용장 등)	– B/S상 지급보증대손충당금 중 관련부분(계약이행보증, 입찰보증, 품질보증 등)
	3. NIF(note issuance facilities)[1] 및 RUF (revolving underwriting facilities)[2]	– Off B/S의 기타지급보증
	4. 계약만기 1년 초과의 기타 약정	– 특정거래 관련 스탠바이 계약(stand-by facilities) 및 신용한도
	5. 원금보전약정이 있는 신탁상품관련 자산	– 일반불특정금전신탁, 개발신탁, 적립식목적신탁 편입자산

〈表 3〉의 繼續

환산율	항 목	계정과목 예시
20%	6. 단기의 자동결제성 무역관련 우발 채무(상업신용장 등)	- Off B/S의 신용장 개설관련지급보증(하환신용장 발급을 위한 지급보증)
0%	7. 계약기간 1년 이하 또는 항시 취소가능한 기타 약정	
0~5%	8. 외국환 및 금리관련 거래	- Off B/S의 외환 및 금리선물 〈表 4〉 참조

註 : 1) NIF(note issuance facilities)란 유로시장에서 이용되는 중장기 자금조달 수단의 하나로 차주의 단기 증권발행과 은행의 중장기 한도지원금융을 결합한 것으로서 인수은행과 차주의 인수약정(계약기간, 금액한도 등)에 의해 차주는 단기증권(3~6개월 CP)을 발행하고 판매업자가 해당증권을 전액 팔지 못했을 경우 은행은 한도범위 내에서 미판매 잔량을 매입(back-up facilities)할 것을 보증하는 제도임.

2) RUF(revolving underwriting facilities)란 NIF의 일종으로 약정 내용은 NIF와 동일하나 증권을 할인하는 형식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

資料 :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表 4〉 銀行의 外國換 및 金利關聯 帳簿外去來의 信用換算率

(單位 : %)

	기 간[1]	금 리 거 래	외 환 거 래
시가노출방식	1년 미만	0.0	1.0
	1년 이상	0.5	5.0
원가노출방식	1년 미만	0.5	2.0
	1~2년	1.0	5.0
	1년 추가	1.0	3.0

註 : 1) 시가노출방식을 택하는 경우는 잔여 계약기간을 사용하나 원가노출방식을 택하는 경우는 당초 계약기간을 사용한다.

資料 :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차대조표 항목의 危險加重資產은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채권의 만기, 담보 및 보증유무 등을 기준으로 위험도에 따라 부여된 危險加重値(0, 10, 20, 50, 100%)를 해당 자산에 곱하여 산출되는데 이 위험가중치는 信用危險을 주로 고려하고 國家危險의 정도를 반영한 것으로 일반 상업대출을 표준적 위험(100%)으로 하여 상대비교한 것이다(〈表 2〉 참조). 예를 들어 현금, 국내예금 수납기관에 대한 당좌예금 등에는 0%, 채무불이행 위험이 거의 없으며 유동성이 대단히 높은 자산 등에는 30%, 중간정도의 위험을 가지는 예금수취기관에 대한 장기예금 등은 60%, 그리고 표준적 위험을 갖는 은행대출 등에는 100%의 위험가중치가 주어진다.

대차대조표 자산 중에는 危險加重資產 算出對象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신탁계정 중 元金補塡 約定이 없는 국민주신탁, 특정금전신탁 및 금전신탁 이외의 신탁(금외신탁 및 재산신탁)과 관련된 운용자산, 연결자회사 중 증권회사의 보관유가증권, 영업권·연결조정차계정 등 자기자본 공제항목의 자산은 위험가중자산 산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有價證券評價 充當金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에서 유가증권평가 충당금을 상계하여 그 설정액만큼을 차감한 금액을 基準으로 危險加重資產이 算出된다. 支給保證과 信託計定 중 元金補塡 約定이 있는 신탁상품 관련 자산은 장부외자산으로 간주하여 위험가중자산이 산출된다.

國家危險을 考慮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OECD 가맹국 및 사우디아라비아는 第1群 國家로 분류하고 이외의 나라들은 第2群 國家로 분류하여 위험가중치에 차이를 두고 있다. 공공부문에 대한 채권에서 公共部門이란 지방자치법에 의한 地方自治團體, 政府投資機關, 地域公企業과 特殊公共法人을 말하며, 이때 특수은행은 정부가 缺損補塡義務를 부담하므로 청산에 이르는 경우 일반은행보

다 위험도가 낮아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은행에 포함되는 범위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업종 중 취급 업무의 은행업과의 유사성, 설립인가의 적정성, 업무취급에 대한 규제·사후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

이로부터 특수은행 채권에는 10%, 시중은행·지방은행·외국은행 국내지점·장기신용은행·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는 20%, 그리고 여타 금융기관에 대한 것에는 100%의 가중치가 주어진다. 타국은행 채권의 경우 제1군 및 제2군의 잔존만기 1년 이하 채권에는 20%, 제2군의 잔존만기 1년 초과 채권에는 100%의 가중치가 주어진다.

住宅을 擔保로 한 대출은 貸出損失 發生이 극히 적으므로 임대 또는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설정된 抵當權에 의해 완전히 補塡된 대출에는 50%의 가중치가 적용되며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은 국내공공기관에 해당되므로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에 의하여 완전히 보전된 대출에 대해서는 10%의 가중치가 적용되지만 주택건설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대한 대출에는 위험의 경감을 인정하지 않아 100%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帳簿外去來도 자본규제의 대상 자산이 되고 있다. 이는 종래의 자기자본규제가 대차대조표 내의 자산만을 규제대상으로 함에 따라 은행들은 資金의 供與 없이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장부외거래를 확대하여 왔다. 이러한 장부외거래도 거래의 성격 및 거래상대방의 신용도에 따라 信用危險을 수반한다. 방만한 장부외거래의 확대는 銀行經營의 健全性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부외거래도 자본규제의 대상이다.

장부외자산 항목의 위험가중자산 계산시 사용되는 信用換算率(credit conversion factor)은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거래유형에 따라 결정된 계수로서 장부외자산을 장부상의 자산으로 환산해주는 변환계수이다. 장부외자산 항목의 위험가중자산은 對替費用(cur-

rent exposure)과 潛在危險露出額(potential exposure, 계약금액×신용환산율)의 合인 信用危險 相當額에 危險加重値를 곱하여 산출된다.

對替費用(current exposure, replacement cost, 關聯契約의 評價益)은 특정 상대방과 체결한 선물거래를 현 시점에서 시가로 평가하여 일정액의 평가익이 발생할 경우 거래상대방의 계약이행 불능으로 계약을 다시 체결하게 된다면 현재까지의 평가익을 상실하는 데 따른 費用을 말한다. 예를 들어 1996년 3월말 현재 1달러 對 800원의 가격으로 1년만기 100만달러의 先物換 買入契約을 체결하였을 경우 1996년 6월말 현재 1997년 3월말 만기되는 선물환 가격의 시세가 1달러 對 810원으로 변동되었다면 1996년 6월말 현재 대체비용은 1천만원(= (810−800)×1,000,000)이 된다.

외국환 및 금리 관련 장부외거래의 신용위험 상당액은 時價露出 方式을 원칙으로 하되 거래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原價露出 方式의 채택이 가능하다. 이때 위험가중치는 50% 범위 내로 한다. 그리고 대체비용을 감안한 경우는 時價露出 方式으로 하며 대체비용을 감안하지 않은 경우는 原價露出 方式으로 한다.

元金補塡 約定이 없는 信託資産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개별계약에 의해 은행계정과 별도로 운용되는 위탁자의 자산이므로 이에는 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된다. 원금보전 약정이 있는 신탁자산은 신탁계정의 원금보전의무를 은행이 부담하므로 은행에 대한 채권과 동일한 위험가중치(20%)가 적용되며 또한 장부외자산의 '특정거래와 관련된 우발채무'로 간주되어 50%의 신용환산율이 적용된다. 이 경우에 信託留保金(채권상각준비금 및 특별유보금)은 특정자산관련 충당금으로 자기자본에서 제외된다.

連結子會社 중 證券會社의 保管有價證券 및 預受有價證券은 증권회사에서 신용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위험가중자산 산출대상에서 除外된다. 자기자본공제항목은 공제액만큼 위험가중자산에서도

除外된다.

預金關聯 또는 一般貸出償還關聯 他店券은 교환결제 전까지는 고객 앞으로 지급되거나 일반대출이 상환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은행의 입장에서는 타점권 보유에 따른 신용위험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에는 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된다.

當座貸越 償還用 他店券은 우리나라 금융관행상 입금 즉시 당좌대월의 감소로 처리되므로 고객에 대한 대출과 동일하게 10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구분에 따른 업무의 번잡과 BIS기준에서 추심중에 있는 현금항목은 모두 2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는 점이 고려되어 모든 타점권에는 2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된다.

運用리스資産은 리스회사에게 시설재이므로 고정자산으로 간주되어 10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된다. 그리고 金融리스資産은 판매 또는 할부금융 지원이기 때문에 대출금으로 간주되어 거래 상대방별 위험가중치가 적용된다.

외상賣出債權은 평균만기일 전까지는 외상채권 미지급금에 의해 담보된 債權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는 自行預金에 담보된 채권과 동일한 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된다. 한편 외상채권매입은 상품구입자에 대한 債權이므로 이에는 10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된다.

은행의 「팩토링」업무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외상賣出貸出 및 외상買入債權 計定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산이다. 그러므로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두 자산을 모두 위험가중자산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二重 計上 效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의 조정이 필요하다.

供託金과 관련된 信用危險은 공탁지정은행의 파산으로 인한 위험이다. 그렇지만 공탁은행은 보관의무만을 부담하고 공탁자산의 상환의무는 法院이 부담하므로 공탁금에는 정부에 대한 채권으로 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된다.

海外支店이 본점(또는 국내지점)에서 발급한 신용장에 의거 해외

수출업자에게 대출을 해준 경우에 본점에서 취급한 外貨支給保證에는 100%의 신용환산율과 거래상대방별 위험가중치가 적용된다. 그리고 해외지점에서 취급한 대출금은 自行預金에 담보된 채권으로 간주되어 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된다.

國民年金轉換金은 근로자에게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이고 국민연금의 지급의무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부담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전환금에는 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된다.

2) 其他 資本規制

가) 最低資本金의 規制

건전하지 못한 은행의 설립과 존속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資本金이 일정 水準에 未達하는 경우는 은행 설립이 허가되지 않고 있다. 1996년말 현재 은행 설립시에 시중은행은 1천억원, 지방은행은 250억원을 최저자본금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은행법」 제16조).

나) 利益準備金의 積立

利益準備金이란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재무적 기초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예금자의 보호를 위하여 은행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利益을 처분하지 않고 內部留保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익준비금을 적립하는 것은 장래의 영업부진 또는 자산의 가격변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예측하지 못한 손실에 대비함으로써 은행의 계속적 존속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1996년말 현재 은행은 적립금이 자본금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決算純利益金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다(「은행법」 제17조의 2).

다) 資本金 變更의 規制

공신력의 기초가 되고 은행경영의 건전성 문제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예금자보호 측면에서도 은행 자본금의 충실화가 요구되기 때문에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 또는 준비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에

는 金融通貨運營委員會의 認可를 받도록 되어 있다(「은행법」 제9조). 그리고 資本金의 增額은 기본적으로 銀行의 經營健全化에 기여하고 金融의 國際化와 그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형화 추세를 감안할 때 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므로 1995년 4월 자본금 증액에 대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인가제도가 폐지되고 事後申告制로 변경된 바 있다.

한편 증권시장은 기업의 자금조달시장으로서만 아니라 투자자에게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증권당국은 증권시장의 수용범위 안에서 上場된 은행의 유상증자 요건·한도를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즉 상장된 은행이 유상증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有價證券申告書 提出豫定日이 속하는 月의 전월 20일까지 有償增資計劃書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 제16조의 2). 유상증자의 기본요건은 증자비율이 납입자본금의 50% 이내이어야 하고 조달금액이 1천억원 이내이어야 하며, 연 1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고 재무상태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韓國上場會社協議會는 有償增資를 전액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상증자 신청물량의 過多 등으로 물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자규모가 적은 회사, 증자실시 격차가 긴 회사, 증자비율이 낮은 회사의 순서로 調整하고 있다.

라) 自己資本 一定比率 이내로의 資產運用

회계기준상 자기자본은 納入資本金, 積立金과 移越利益剩餘金의 합계에서 未支給 資產再評價稅 및 保有 自己株式을 差減한 수치로 산정된다. 위험도가 높은 자산 또는 무수익성 자산의 과다 보유 등은 銀行經營의 健全性을 저해하기 때문에 회계기준상의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資產運用이 制限되고 있다.

은행의 업무 중에서 지급보증은 여신의 일종이지만 그 위험이 타인의 지급능력 또는 지급의사에 크게 좌우되는 반면 대출이나 어음

할인 등과는 달리 실제 資金 供與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자칫 방만하게 운용될 경우 은행에 損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자기자본은 은행이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200분의 10 이상, 즉 支給保證은 自己資本의 20배 이내로 制限되어 있다(「은행법」 제15조 제1항).

업무용고정자산 구입을 위한 자금은 장기 고정화되기 때문에 타인자본으로 조달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대출이나 유가증권과는 달리 수익을 창출할 수가 없으므로 업무용부동산 투자는 규제된다. 즉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업무용부동산 투자는 금지되고 있다(「은행법」 제27조 제1항 제2의 2호). 經營指導基準에는 '業務用不動產比率(業務用不動產/自己資本)'의 표준비율이 자기자본의 40% 이내로 制限되고 있다(「金融機關監督業務 施行細則」 제45조 제2항 제3호).

은행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자산이 일부 기업들에게만 집중 공급되는 것을 억제하고 금융기관의 기업 지배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가 규제되고 있다. 은행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自己資本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貸出 및 自己資本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은행법」 제27조 제1항 제4호 및 제4의 2호).

또한 동일 계열기업군에 대한 대출이 자기자본에 비하여 과다한 은행에 대하여는 이에 해당되는 대출의 단계적인 감축이 유도된다. 즉 同一 系列企業群에 대한 貸出이 自己資本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그 초과금액이 여신한도에서 감축되고 있다.

2. 相互信用金庫

가. 最低資本金의 規制

相互信用金庫도 最低資本金의 規制를 받고 있다. 즉 영업지역별

로 特別市는 60억원, 廣域市는 40억원, 道는 20억원이다(「상호신용금고법」 제5조).

나. 利益金의 積立

相互信用金庫는 매사업연도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한 금액이 자본금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도록 되어 있다(「상호신용금고법」 제19조). 이 적립금은 손실금의 補塡 및 資本轉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다. 資本金 變更의 規制

上場된 相互信用金庫가 有償增資를 하고자 하는 경우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이 속하는 月의 전월 20일까지 有償增資計劃書를 韓國上場會社協議會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 제16조의 2). 유상증자의 기본요건은 증자비율이 납입자본금의 50% 이내이어야 하고 조달금액이 1천억원 이내이어야 하며 그 밖에 연 1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고 재무상태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韓國上場會社協議會는 유상증자를 전액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상증자 신청물량의 과다 등으로 물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자규모가 적은 회사, 증자실시 격차가 긴 회사, 증자비율이 낮은 회사 등의 순서로 조정하고 있다.

라. 自己資本 一定比率 이내로의 資產運用

상호신용금고는 동일인에 대하여 自己資本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급부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또한 상호신용금고는 自己資本의 20배 이내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예금의 수입과 기타의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없다(「상호신용금고법」 제13조).

3. 證券會社

가. 綜合的인 財務狀態에 대한 自己資本管理制度의 導入

1) 導入背景

금융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신규업무 확대, 규제완화, 국제화 등에 따른 경쟁격화 및 선물, 「옵션」 등 위험이 높은 파생상품의 출현 등으로 증권회사의 경영에 불안정성이 증대되었다. 또한 국내 증권회사의 對外 信認度 提高 및 외국 감독기관과의 共同 監督協力基盤 構築 등을 위하여 감독기준의 국제화가 요청되었다. 이에 따라 종합적인 재무상태에 대한 自己資本의 管理制度가 1997년 4월부터 도입되었다.

2) 自己資本管理制度

自己資本管理制度는 증권회사의 개별 자산운용에 대해 관여하지 않고 綜合的인 재무상태에 관해서만 財務監督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즉 재무상태가 건전한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개별 자산보유, 상품운용, 자금조달 등 재무경영에 관한 일체의 관여를 배제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증권회사가 즉시 현금화될 수 있는 자산규모가 부채규모와 예상되는 손실규모의 합계액보다 항시 크도록 함으로써 流動性 不足이나 損失急增으로 인한 財務不安을 사전에 예방하고 영업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투자자의 재산을 차질없이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종합적인 재무상태에 관한 감독기준으로 영업용순자본비율이 적용되는데 이의 算式은 다음과 같다.

營業用純資本比率＝營業用純資本/總危險

營業用純資本은 해당시점의 자기자본에서 고정성 자산 등을 차감하고 증권거래준비금 등을 가산하여 算定한다. 이 가운데 자기자본은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결산기말 이후의 자본금, 잉여금 및 자본조정계정의 변동은 물론 결산기말 이후의 當期損益 變動도 포함한다.

차감항목은 신속하게 현금화되지 않는 市場性 및 換金性이 없는 자산으로서 다음과 같다.

① 유동자산 중 신속하게 현금화될 수 없는 선급금, 선급비용 및 선급법인세(단 상품채권 등에서 발생한 先給經過利子는 차감하지 아니한다)

② 投資資産 總額(단 3개월 이내 인출·상환이 가능한 장기성 예금 및 시장성이 있는 투자유가증권은 차감하지 아니한다)

③ 其他資産 總額(단 부채상환이나 우발채무에 대비하기 위하여 외부에 예치한 금전 등의 고정성 자산은 차감하지 아니한다)

④ 固定資産 및 移延資産 總額(단 부동산은 시가감정평가액의 70%, 1년 이상 부채의 부동산담보 차입금액 및 임대보증금과 장부가액의 30% 상당액 중 작은 금액은 차감하지 아니한다)

가산항목은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계상되었으나 실질적인 채무이행의무가 없으면서 미래손실에 대비하여 내부에 유보시킨 證券去來準備金(증권거래 책임준비금, 증권매매 손실준비금), 현물상환이 가능한 리스負債, 장래 예상되는 손실을 충당할 목적으로 자산의 차감금액으로 계상되어 있는 貸損充當金 및 評價充當金 등이 있다.

또한 매매거래를 위하여 보유하는 상품계정을 시가기준으로 평가하여 매시점의 재무상태가 적절히 드러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모든 상품「포지션」을 시가로 평가하여 그 評價差益·差損을 自己資本에 加減한다. 이와 아울러 선물·선도거래 및 옵션거래와 관련한 未實現損益도 자기자본에 加減한다.

한편 총위험은 시장위험, 거래상대방위험 및 기초위험으로 구성된다.

市場危險은 주로 증권회사가 자기매매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품자산의 시세나 파생상품 등의 가치가 미래에 불리하게 변동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손실위험을 계량화하여 평가한 것으로 특정 시점에서의 포지션시가액에 해당 위험상당치를 곱하여 산정한다. 시장위험은 채권포지션위험, 주식포지션위험, 수익증권포지션위험, 외환포지션위험, 인수위험 및 옵션위험의 합계액으로 구성된다.

채권포지션위험은 채권그룹별 포지션시가액에 해당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表 5〉 참조). 發行者에 따른 채권그룹별 分類는 다음과 같다.

① A그룹 : 각국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거나 보증한 채권, 특별법인이 발행한 채권, 국내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채권 및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한 채권 등

② B그룹 : 단자사가 인수한 기업신용어음, 감독원장이 정하는 국내신용평가전문회사, S&P社 및 무디스社의 평가등급이 상위 4등급 이내인 채권 등

③ C그룹 : A, B그룹에 속하지 않는 기타의 시장성이 있는 채권 등

주식 포지션위험은 株券, 예탁증서 및 주가지수선물 등을 대상으로 산출하는데 산출방법은 총포지션(롱 포지션+쇼트 포지션)에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하는 제1방법과 일반위험(순포지션×10%)과 개별위험(총포지션×위험가중치)을 더하여 산출하는 제2방법이 있다(〈表 6〉 참조).

〈表 5〉 證券會社의 債券포지션 危險加重値

(單位 : %)

잔 존 기 간	A그룹	B그룹	C그룹
0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0.1	0.25	30
3개월 초과 ~ 1년 이내	0.5	1.0	30
1년 초과 ~ 3년 이내	2.5	4.0	30
3년 초과 ~ 5년 이내	4.0	6.5	30
5년 초과	7.0	12.0	30

資料 : 증권감독원.

〈表 6〉 證券會社의 株式 포지션 危險加重値

(單位 : %)

산 정 방 법	거 래 종 류	위 험 가 중 치
제1방법	주가지수선물	10
	현 물 주 식	15
제2방법	주가지수선물	0
	현 물 주 식	5

資料 : 증권감독원.

수익증권 포지션위험은 투자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외국법에 의하여 발행된 이에 준하는 契約型 收益證券(trust fund) 및 외국투자회사가 발행한 出資證書 등의 해당 시가에 危險加重値를 곱하여 산출된다(〈表 7〉 참조).

引受危險은 총인수대상금액에 각 인수증권의 위험가중치를 곱하고 조정금액을 차감하여 산출되며, 외환포지션위험은 통화별 순포지션에 5%의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산출된다. 그리고 옵션위험은 매입포지션에 대해서는 당해 옵션의 시가액을 전액 위험액으로 산정하며 매도포지션에 대해서는 원증권의 시가액에 원증권의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위험액으로 한다.

〈表 7〉 證券會社의 收益證券포지션 危險加重値

(單位 : %)

수익증권의 종류			위험가중치
투자신탁회사 발행증권 등	수시해지가능「펀드」의 주식 등[1] 편입비율 (시가기준)	30 이하	3
		30 초과~80 이하	8
		80 초과	15
	폐쇄형 상장 수익증권		15
	기타의 수익증권[2]		20
외국투자회사 공모증권 등	적격거래소 상장 및 수시환매가능 증권		20
	기타의 수익증권[2]		40

註 : 1) 주식, 출자증서 및 주가지수선물을 말한다.
2) 외국법에 의한 수시해지가능 계약형 수익증권과 수시해지할 수 없으나 3개월 이내 상환될 수 있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資料 : 증권감독원.

시장위험액 산정과 관련하여 증권회사가「헤지」거래 등을 통하여 위험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경우 이를 營業用純資本比率 報告書上의 위험액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이는 감독당국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객관성을 검증받은 경우에 한한다). 다만 주식위험 및 환율변동위험은 별도의 협의없이 소정의 산정방법에 의하여 롱 포지션과 쇼트 포지션의 상쇄가 허용된다.

去來相對方危險은 거래상대방이 결제 등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회사가 입게 되는 손실위험을 계량화하여 평가한 것이다. 이 위험은 채무보증위험, 대고객 신용공여위험, 기타의 단기대여금 위험, 유가증권대차거래위험, RP거래위험, 결제기일경과 미수채권 위험 및 장부외거래로 이루어진「스왑」거래, 선도거래 등의 派生商品危險의 合計로 구성된다.

거래상대방위험 중 派生商品危險은 파생상품의 계약대상금액에 신용환산율을 곱한 후 이에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산출된다(〈表 8〉

및 〈表 9〉 참조).

〈表 8〉 證券會社의 派生商品 信用換算率

(單位 : %)

	기 간[1]	금리스왑거래 금리선도거래	통화스왑거래 외환선도거래
시가노출방식	1년 미만	0.0	1.0
	1년 이상	0.5	5.0
원가노출방식	1년 미만	0.5	2.0
	1～ 2년	1.0	5.0
	1년 추가	1.0	3.0

註 : 1) 시가노출방식을 택하는 경우는 잔여 계약기간을 사용하나 원가노출방식을 택하는 경우는 당초 계약기간을 사용한다.

資料 : 증권감독원.

〈表 9〉 證券會社의 去來相對方 危險加重値

(單位 : %)

거 래 상 대 방	위 험 가 중 치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국제기구	0
금융기관	2
기타법인 및 개인	8

資料 : 증권감독원.

基礎危險은 手數料 收入 減少 등 영업실적의 변동위험이나 증권업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우발채무 위험 및 청산절차 진행에 수반되는 경비 지출 등에 따른 손실위험을 계량화한 것으로 그 위험액의 크기는 회사가 經常的 營業活動 過程에서 固定的으로 支出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비에 비례한다. 구체적인 기초위험액은 기준일이 속하는 月의 직전 1년간 발생한 일반관리비에 그 기간중에 발생한 조정항목을 가감한 금액의 25%이다.

系列會社 등 증권회사와 이해관계를 갖는 者와의 과도한 거래로 인하여 이들의 재무불안이 증권회사의 재무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이들 거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別途 算定方法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① 이해관계인(계열회사 등)이 발행한 유가증권이나 이들에 대한 채권은 營業用純資本 算定時 全額 自己資本에서 差減한다(다만 제3자에 의한 지급보증 등이 있는 경우는 예외).

② 연결재무제표의 대상이 되는 子會社의 缺損額을 해당지분만큼 자기자본에서 차감한다.

③ 系列會社(자회사 이외)에 대한 채무보증에 대해서는 100%의 去來相對方 危險加重値가 적용된다.

④ 연결재무제표의 대상이 되는 子會社에 대한 債務保證은 자회사의 재무상태 및 해당 감독기관의 감독수준 등을 감안하여 위험가중치가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외국증권회사 국내지점에 대해서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거주자에 대한 금전채권이나 해외에 예치한 증권 등의 時價額을 自己資本에서 差減한다. 이는 해외본사 파산시 국내지점 거래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증권회사는 最低 營業用純資本比率(영업용순자본/총위험)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최저기준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재무악화에 早期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早期警報水準을 설정하고 있다.

① 제1단계 : 營業用純資本比率이 150%에 미달되는 경우 증권회사는 不動產取得, 他法人出資, 金錢配當 등의 영업용순자본 감소행위를 사후에 감독당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2단계 :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20%에 미달되는 경우 증권회사는 세부적인 財務構造 改善計劃書를 작성하여 감독당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 제출주기를 주 1회로 전환한다. 또한

영업용순자본 감소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필요시 재무 및 회계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③ 제3단계 : 영업용순자본비율이 최저기준(100%)에 미달되는 경우 證券管理委員會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즉 특별검사 실시, 업무방법 개선명령, 예탁금의 별도예치,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 정지 및 허가취소의 건의 등을 할 수 있다.

한편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 이상으로 재무구조가 양호한 경우는 재무간섭을 하지 않되 매월 영업용 순자본의 비율 및 내용을 보고토록 한다.

나. 其他 資本規制

1) 最低資本金의 規制

證券會社는 最低資本金에 대하여 규제를 받고 있다. 즉 증권회사의 자본금은 5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그러나 유가증권시장 이외에서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업무만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의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재정경제원 장관은 유가증권의 거래상황, 자산상태, 기타 공신력 등을 참조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최저 자본금의 2배 이내에서 資本金의 增額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증권거래법」 제28조 제5항,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2) 資本金 變更의 規制

證券會社는 資本金 變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제를 받고 있다. 즉 상장된 증권회사가 有償增資를 하고자 하는 경우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예정일이 속하는 月의 전월 20일까지 有償增資計劃書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

제16조의 2).

유상증자의 기본요건은 증자비율이 납입자본금의 50% 이내이어야 하고 조달금액이 1천억원 이내이어야 한다. 그리고 유상증자는 기본적으로 연 1회에 한하여 허용되며 재무상태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에 이상이 없어야 하는 것도 유상증자의 기본요건이다. 韓國上場會社協議會는 유상증자를 전액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상증자 신청물량의 과다 등으로 물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자규모가 적은 회사, 증자실시 격차가 긴 회사, 증자비율이 낮은 회사 등의 순서로 조정하고 있다.

3) 自己資本 一定比率 이내로의 資產運用

증권회사는 법령에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株式, 債權 등의 商品有價證券을 自己資本의 60% 이상을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自己資本은 최근 결산기말의 資產總額에서 負債總額과 최근 결산기말 이후 잉여금 처분에 의한 社外流出額(예정액 포함)을 차감하고 최근 결산기말 경과 후 資本金 및 剩餘金의 變動額을 加減한 금액이다(「증권회사의 자산운용준칙」 제3조 제2항).

또한 동일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發行 株式總數의 100분의 5와 證券會社 自己資本의 100분의 6을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증권회사의 자산운용준칙」 제4조 내지 제6조). 증권회사는 법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自己資本의 100분의 8을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하고 자기자본이 2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100분의 2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하며 계열회사 발행 채권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증권회사의 자산운용준칙」 제7조).

證券會社는 증권관계기관, 증권업에 부수된 업무나 파생된 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표준산업 분류상 금융·보험업에 속

하는 법인, 기타 감독원장이 정하는 법인에만 출자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출자하지 못하고 出資總額이 自己資本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자시마다 證券管理委員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증권회사의 자산운용준칙」 제9조).

그리고 證券會社의 信用去來融資와 信用去來貸株의 限度는 각각 자기자본의 150% 및 50%이다(「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2항). 또한 증권회사의 유가증권매입자금대출 및 예탁증권담보대출 한도는 각각 자기자본의 50%이다(「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1항 및 제31조 제1항).

4. 投資信託會社

가. 最低資本金의 規制

投資信託會社도 最低 資本金에 대하여 規制를 받고 있다. 즉 투자신탁회사의 자본금은 3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증권투자신탁업법」 제9조 제1항).

나. 資本金 變更의 規制

투자신탁회사가 資本金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財政經濟院 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증권투자신탁회사의 자산운용에 관한 준칙」 제17조).

다. 自己資本 一定比率 이내로의 資產運用

투자신탁회사는 自己資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業務用 不動產을 소유하지 못한다(「증권투자신탁회사의 자산운용에 관한 준칙」 제5조). 資產運用準則에서의 自己資本은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본총계에서 당해 사업연도중에 현금으로 이익배당한

금액을 차감하고 당해 사업연도에 유상증자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이다.

또한 투자신탁회사는 투자신탁의 상환 또는 해지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으로서 株式市場의 沈滯, 株式型 收益證券의 換買가 대량 발생하여 이를 再賣却하기가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자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증권투자신탁회사의 자산운용에 관한 준칙」 제8조). 자기자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公社債型 投資信託 純資産 總額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여 債券 및 公社債型 收益證券을 소유하지 못한다(「증권투자신탁회사의 자산운용에 관한 준칙」 제9조).

그리고 투자신탁회사는 上場이 예정된 有價證券, 자기가 발행한 非上場有價證券, 금융기관 등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투자신탁회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하기 위해 재정경제원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득한 유가증권을 제외하고는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여 非上場有價證券을 소유하지 못한다(「증권투자신탁회사의 자산운용에 관한 준칙」 제10조). 그 밖에 직전 월말 自己資本에 대한 借入金의 비율이 50% 이하인 投資信託會社는 매입어음, 콜론(call loan) 및 단기 대여금의 월평균잔액을 자기자본의 30% 이하로 운용하여야 하고 차입금의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투자신탁회사는 단기 대여금을 자기자본의 15% 이하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다(「증권투자신탁회사의 자산운용에 관한 준칙」 제13조).

5. 綜合金融會社

가. 最低資本金의 規制

종합금융회사의 資本金도 그 最低限度가 規制되고 있다. 즉 종합금융회사의 자본금은 3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나. 資本金 變更의 規制

上場된 종합금융회사가 有償增資를 하고자 하는 경우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이 속하는 月의 전월 20일까지 유상증자계획서를 韓國上場會社協議會에 提出하여야 한다(「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 제16조의 2). 유상증자의 기본요건은 증자비율이 납입자본금의 50% 이내이어야 하고 조달금액이 1천억원 이내이어야 하며 연 1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고 재무상태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에 이상이 없어야 하는 것 등이다. 韓國上場會社協議會는 유상증자를 전액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상증자 신청물량의 과다 등으로 물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자규모가 적은 회사, 증자실시 격차가 긴 회사, 증자비율이 낮은 회사의 순서로 조정한다.

다. 自己資本 一定比率 이내로의 資產運用

종합금융회사는 資本金과 積立金 및 기타 잉여금 합계액의 10배의 범위 안에서 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그리고 종합금융회사는 재정경제원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입금, 어음·채권증서 및 채권의 발행, 담보책임을 지는 어음의 매출, 지급보증(어음의 인수 포함)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20배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이때 30대 대기업군의 경우에는 각 기업군당 자기자본의 1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綜合金融會社는 동일인에 대하여 어음의 할인과 대출을 자기자본(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할 수 없고 지급보증의 경우에도 같은 한도를 적용한다(「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종합금융회사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없다(「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그 밖에 종합금융회사는 업무용 부동산

외에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 담보권의 실행에 의한 경우는 제외되며 이때 업무용 부동산 소유의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이다(「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6. 保險會社

가. 最低資本金의 規制

保險會社의 最低資本金도 규제되고 있는데 人保險事業에 있어서는 100억원 이상, 損害保險事業에 있어서는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하여야 한다(「보험업법」 제6조).

나. 資本金 變更의 規制

상장된 보험회사가 有償增資를 하고자 하는 경우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이 속하는 月의 전월 20일까지 有償增資計劃書를 韓國上場會社協議會에 提出하여야 한다(「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 제16조의 2). 그리고 유상증자의 기본요건은 증자비율이 납입자본금의 50% 이내이어야 하고 조달금액이 1천억원 이내이어야 하며 연 1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고 재무상태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에 이상이 없어야 하는 것 등이다. 韓國上場會社協議會는 有償增資를 全額 許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상증자 신청물량의 과다 등으로 물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자규모가 적은 회사, 증자실시 격차가 긴 회사, 증자비율이 낮은 회사의 순서로 조정한다.

다. 經營指導基準

保險會社의 經營 健全化를 위하여 재정경제원 장관은 자기자본 충실화 등의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보험업법」 제6조의 3 제1항). 보험사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재정경제원 장관은 자본금 또는 기금의 증액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보험업법」 제6조의 3 제2항).

라. 生命保險會社의 支給餘力에 관한 規制

보험감독당국은 생명보험회사의 지급여력을 충실하게 함으로써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회사 경영상태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生命保險會社에 대한 支給能力을 規制하고 있다. 支給能力이란 회사가 보험계약 등과 관련하여 지고 있는 각종 채무에 대한 이행능력을 말한다. 한편 支給餘力이란 會社債務에 대한 餘力으로서 자본금,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해약환급금방식에 의한 보험료 적립금을 초과하는 보험료 적립금, 계약자에게 할당되지 아니한 계약자배당준비금, 고정자산평가준비금, 대손충당금, 기타 지급능력 충실화를 위하여 보험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의 총 합계액이다.

생명보험회사는 지급여력기준인 매사업연도 말 책임준비금의 1% 이상의 지급여력을 보유하여야 한다(「생명보험회사의 지급능력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 責任準備金에는 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 지급준비금, 보험배당준비금 등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항목들이고 지급여력기준에는 계약자에게 할당되지 않은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제외한다.

생명보험회사는 당해 연도 지급여력과 다음 사업연도의 예상 지급여력을 매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保險監督院長에게 報告하도록 되어 있다. 證券去來所에 上場한 회사는 지급여력의 계산시 '解約還給金式 保險料積立金' 대신 '純保險料式 保險料積立金'을 사용한다.

보험감독원장은 지급여력이 기준보다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에 대하여 지급여력 확보를 위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자본금 증액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다(「생명보험회사의 지급

능력에 관한 규정」 제6조). 資本金增額 勸告를 받은 생명보험회사가 그 이행기간까지 자본금 증액을 하지 않아 지급여력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자본금증액 권고를 받지 않은 회사의 지급여력이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보험감독원장은 재정경제원 장관에게 자본금 증액을 위한 명령발동을 건의할 수 있다(「생명보험회사의 지급능력에 관한 규정」 제7조).

마. 損害保險會社의 保險契約者 剩餘金에 관한 規制

보험감독당국은 보험산업의 안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손해보험사업자의 자산상태나 담보능력 등에 관하여 保險契約者剩餘金을 規制하고 있다. 보험계약자 잉여금이란 다음 가산항목의 합계액에서 차감항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손해보험회사 보험계약자 잉여금 및 재보험관리규정」 제3조).

加算項目에는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비상위험준비금 등의 준비금이 있다. 한편 差減項目에는 이연자산, 자기주식, 최근 종료된 사업연도의 결산재무제표에 의하여 자본의 50% 이상이 잠식된 회사 또는 조합 등의 주식 또는 지분, 선급비용, 임·직원 전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소요되는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일부 계정과목의 대손충당금 해당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이 있다.

그리고 손해보험회사의 年間 保有保險料 總額(연간 보유보험료 총액이 연간 수입보험료 총액의 50%에 미달할 때에는 연간 수입보험료 총액의 50%)은 보험계약자 잉여금의 5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손해보험회사 보험계약자 잉여금 및 재보험관리규정」 제5조). 보유보험료 및 수입보험료에는 장기저축성보험의 저축보험료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Ⅲ. 金融機關에 대한 資本規制의 外國事例

1. BIS와 IOSCO

가. 1988年에 制定된 BIS의 資本比率規制

1) 背景

1970년대 이후 주요 先進國들이 金融政策의 운용에 있어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중시함에 따라 금리자유화, 은행업무에 대한 규제 완화, 국가간 자금이동의 자유화, 자금 조달 및 운용면에 있어서의 증권화 등이 급속히 진전되었다. 이 영향으로 은행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銀行의 收益性이 크게 惡化되었고 은행은 이를 補塡하기 위하여 高危險－高收益 위주의 資產運用 戰略을 추구함으로써 資產의 質이 저하되었으며 자금공여 없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帳簿外去來(off-balance sheet transaction)를 대폭 확대함에 따라 潛在的 危險도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국가간 자본이동의 자유화로 외국환시세의 변동에 따른 환위험 및 국가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國際銀行시스템의 不安定性도 深化되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중반부터 선진국 감독당국들은 銀行 自己資本의 適正性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 결과 1988년 7월 國際決濟銀行(BIS)의 銀行規制監督委員會(Committee on Banking Regulations and Supervisory Practices : 바젤위원회)는 「자기자본 측정과 기준에 관한 국제적 합의(International Convergence of Capital Measurement and Capital Standard)」를 제정하였다. 이 합의는 상업은행의 信用危險(credit risk)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국제은행시스템의 안정성 제고 및 국제업무를 영위하는 상업은행들 간의

경쟁조건의 형평성 확보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 은행규제감독위원회는 각국 감독당국간 협력 강화를 통하여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은행감독제도의 개선, 은행감독에 관한 일반원칙의 수립, 감독업무의 국제협력 증진 및 정보교환, 국제금융 위험의 조기경보 등을 주요 機能으로 하고 있다. 은행규제감독위원회의 회원으로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등 G-10 국가와 룩셈부르크의 중앙은행 및 감독당국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형성된 BIS 規制는 원칙적으로 바젤위원회 회원국가인 G-10 국가와 룩셈부르크 등 12개국의 국제업무에 종사하는 은행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銀行監督當局은 1992년 7월 「金融機關 經營指導에 관한 規定」 및 「同 施行細則」 제정시 BIS 기준규제방식의 자기자본 규제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중이다. 이는 BIS 규제가 BIS 회원국 등 선진국에서 자국의 국제금융업무와 관련된 외국은행에 대해 강제적으로 적용할 것이 예상되고 國際金融市場에서의 信認度 提高, 經營危險의 效率的 管理, 銀行 監督面의 國際協力 強化 등을 위해 필요하며, 특히 금융자율화 확대시 은행의 높은 리스크 업무 확대 및 장부외거래의 증가에 따른 銀行 經營의 健全性 惡化 現象을 豫防하기 위한 것이다.

2) 規制의 內容

規制의 內容을 살펴보면 自己資本比率(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이 8% 이상이어야 하도록 되어 있다. 자기자본비율은 연결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산정되며 연결대상은 은행업 및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이다.

自己資本은 기본자본, 보완자본, 공제항목으로 구분되고 자기자본의 50% 이상은 基本資本이어야 한다. 기본자본(tier 1 또는 core

capital)은 주식자본과 공표준비금으로 이루어진다. 株式資本에는 普通株와 非累積配當型 優先株의 발행에 의하여 조달된 납입자본금이 포함된다. 公表準備金이란 일반적으로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영업활동 결과 발생한 이익 중 주주에게 지급되지 않고 내부 유보된 자금이다.

補完資本(tier 2 또는 supplementary capital)은 전형적인 자기자본은 아니지만 자기자본에 포함될 수 있는 정당하고 중요한 성질을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항목으로 각국의 會計·租稅制度에 따라 監督當局의 裁量으로 결정된다. 그 例는 비공표준비금, 재평가준비금, 일반충당금 및 대손충당금, 부채성 자본조달 수단, 기한부 후순위채 등이다.

非公表準備金이란 자산의 과소평가, 부채의 과대계상, 평가손익의 과대계상 등으로 실질적인 순이익이 B/S 표시액 이상으로 잠재 유보되어 있을 때 그 초과액(사실상의 순자산의 가치에서 B/S 계상액을 차감한 것)을 의미하며 비밀적립금 또는 비밀준비금이라고도 한다. 再評價準備金의 경우 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 B/S상 공식적으로 재평가된 것과 유가증권 평가익의 45%(이익 실현시 부과될 세금을 감안한 것)가 인정된다.

一般充當金 및 貸損充當金은 위험가중자산의 1.25%(특별한 경우 2%) 이내에서 인정되나 특정자산에 충당하기 위해 보유하거나 특정자산의 평가액의 감소를 반영하는 경우는 불특정 손실에 자유로이 이용될 수 없기 때문에 보완자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負債性資本調達 手段(hybrid debt capital instruments)은 주식과 부채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만기가 정하여지지 않고 은행의 청산시까지 상환의무가 없는 항목으로 累積配當型 優先株式과 永久後順位債 등이다. 期限附 後順位負債(subordinated term debt)는 만기가 고정되어 있고 은행이 청산하는 경우에만 손실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 항목으로 원계약기간이 5년을 초과하고 적절한 상각 이행

을 조건으로 하여 기본자본의 50% 이내에서 인정된다.

自己資本의 控除項目에는 기본자본 공제항목인 영업권과 총자기자본 공제항목인 금융업을 영위하는 비연결자회사에 대한 출자금과 타은행이 발행한 자본조달 수단이 있다. 營業權은 合併·買收 등에 따르는 무형의 이익으로 가까운 장래에 상각될 것이 확실하므로 기본자본에서 공제하지만 경과기간중에는 각국 감독당국의 재량으로 공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 금융제도 내에서 동일한 자기자본이 복수회사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非連結子會社에 대한 출자금은 자기자본에서 공제되는데 이때 공제액만큼 위험가중자산에서도 공제된다.

타은행이 발행한 자본조달 수단은 한 금융기관의 問題가 여타 금융기관에 급격히 전파되어 銀行産業의 健全性을 惡化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총자기자본으로부터 공제한다. 그러나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은행의 매수·합병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에서의 영향을 감안하여 타은행 발행의 자본조달 수단은 공제가 의무화되지는 않았으며, 단 공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危險加重値를 100% 적용하여 위험가중자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대차대조표 항목의 위험가중자산 계산시 위험은 신용위험과 이의 연장선상에 있는 국가위험에 한정하고 기타 위험의 포함여부는 각국의 재량으로 결정된다. 信用危險의 정도는 일반 상업대출을 표준위험(100%)으로 하여 자산별 절대가치가 아닌 표준위험에 대한 상대가치로 0%, 10%, 20%, 50%, 100%의 5가지 가중치로 구분된다(〈表 10〉 참조).

자국 내에 있는 公共部門에는 각국 감독당국의 재량에 따라 0%, 10%, 20%, 5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고 은행간 채권의 경우는 OECD 국가의 은행에 대한 채권과 잔존만기 1년 이하의 채권에는 20%의 가중치가 적용되며 非OECD 國家의 1년 초과 채권에 대해서는 100%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國家危險은 資本市場 및 國際政

治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논리적 합리성과 정치적 수용성의 조화가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높은 신용력을 갖는 특정한 국가(OECD 국가)들은 자국과 동등하게 취급된다.

현금(예금), OECD 국가의 중앙정부 및 특정 국제개발은행 발행 채권에 의해 담보된 대출에는 담보자산의 위험가중치와 동일한 위험가중치가 적용된다. 그리고 OECD 국가의 중앙정부, 공공부문 및 은행에 의하여 보증된 대출에 대해서는 당해 보증인에 대한 직접채권에 적용하는 危險加重値가 적용된다. 다른 不動産을 담보로 한 대출에 대해서는 위험 輕減이 인정되지 않으나 임대 또는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또는 예정인) 주택에 설정된 抵當權에 의해 완전히 補塡된 貸出에 대해서는 5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된다.

장부외거래 항목의 위험가중자산 계산시 장부외자산에는 다음 式과 같이 名目元金에 信用換算率(credit conversion factor)을 곱해서 신용위험 상당액을 산출한 후 이 금액에 대차대조표 자산에 적용하는 거래상대방별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 위험가중자산에 산입한다.

危險加重資産 = 信用危險 相當額(명목원금×신용환산율)×
危險加重値

〈表 10〉 BIS의 資産別 危險加重値

위 험 가 중 치	구 성 자 산
0%	현금, 현지통화에 의해 조달된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에 대한 현지 통화표시 채권, OECD국가의 중앙정부·중앙은행에 대한 기타 채권, 현금 또는 OECD국가의 중앙정부에 의해 담보되거나 보증된 채권, 현지통화표시 채권의 범위내에서 OECD국가 이외의 중앙정부·중앙은행에 대한 현지통화표시 채권

〈表 10〉의 繼續

위 험 가 중 치	구 성 자 산
각국 재량에 따라 0, 10, 20, 50% 적용	중앙정부 이외의 자국 공공부문에 대한 채권 및 동 부문에 의해 보증된 대출
20%	국제개발은행에 대한 채권 및 이들 은행의 발행채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OECD국가의 은행에 대한 채권 및 OECD국가의 은행에 의해 보증된 대출, OECD국가 이외의 은행에 대한 잔존기간 1년 이하의 채권 및 OECD국가 이외의 은행에 의해 보증된 잔존기간 1년 이하의 대출, 결제미필어음
50%	임대되어 있거나 채무자가 현재 또는 장래 거주할 주택에 대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 완전히 보전된 대출
100%	기타 모든 자산

資料 : BIS, "International Convergence of Capital Measurement and Capital Standards," July 1988(as amended to April 1995).

信用換算率은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거래유형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항목화할 가능성을 기초로 결정된다. 일반적인 채무보증 등의 직접적인 대체거래에는 100%의 신용환산율, 계약이행보증, 입찰보증, 품질보증 등의 특정거래와 관련된 우발채무에는 50%의 신용환산율, 담보된 荷換信用狀 등의 상품이동에 따르는 단기채무 또는 유동성이 높은 무역관련 우발채무에는 20%의 신용환산율, 원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약정 또는 NIF 및 RUF에는 50%의 신용환산율, 원계약기간이 1년 이하이거나 언제나 무조건 취소가 가능한 약정에는 0%의 신용환산율이 적용된다.

金利 및 外換 關聯去來(스왑, 옵션, 선물 등)에는 별도의 방식이 적용된다. 즉 이에는 時價露出方式이나 原價露出方式에 의해 契約에 따르는 신용위험 상당액이 산정된다.

나. 1995年에 制定된 BIS의 資本比率規制

1) 市場危險에 對比한 資本規制 強化

1995년에 제정된 보고서에서 BIS는 은행에게 信用危險 외에 市場危險에 대비하여 1998년 이전까지는 별도의 일정 자본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였다. BIS 규정에서 자본규제 대상이 되는 시장위험은 장부외거래를 포함하여 부채성 유가증권 및 주식에 대한 證券去來計定(trading book)상의 위험과 은행이 지니고 있는 외환위험 및 상품거래위험이다. 또한 모든 종류의 옵션에 포함된 가격위험도 자본규제의 대상이다.

市場危險은 기본적으로 대상 거래에 대한 현재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시장위험은 해당 은행의 세계 전지역 업무에 대한 연결거래를 기준으로 평가되는 것이 원칙이다.

BIS는 시장위험을 측정하는 '標準方式'을 제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감독당국의 승인을 조건으로 개별 은행의 내부 위험관리모형에 의한 시장위험관리 방식도 허용하고 있다. 개별 은행의 내부 위험관리모형은 감독당국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① 危險管理體系의 充分性(adequacy)에 대한 일반적 기준 ② 危險管理模型 活用에 관한 내부감시의 질적 기준 ③ 市場危險의 決定要因에 대한 타당성 기준 ④ 市場危險 측정시 사용되는 계수에 대한 量的 基準 ⑤ 危險管理模型의 사용에 관한 외부감시의 정당성 기준 ⑥ 은행이 BIS의 標準方式과 內部 危險管理模型에 의한 방식을 병행하여 사용할 경우 사용원칙에 관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BIS의 표준방식은 부채성 유가증권 및 주식의 포지션에 대하여

'특정위험(specific risk)'과 '일반시장위험(general market risk)'을 분리하여 측정한 후 각각의 경우에 필요한 자본을 합산하는 '分離測定方式(building-block approach)'을 따르고 있다. 내부 위험관리 모형이 사용될 경우에는 본 모형으로 측정된 특정위험에 부과된 필요자본은 적어도 BIS 표준방식에 의할 경우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이와 같이 BIS는 시장위험에 따른 資本規制를 強化하였다. 이에 따라 1998년 이후 銀行의 最低 必要資本은 ① 1988년의 규정에 따라 장외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상대의 신용위험을 포함한 신용위험에 부과된 자본과 ② 부채성 유가증권, 주식, 외환, 상품거래, 옵션에 관련된 시장위험에 대하여 BIS 표준방식에 의한 필요자본 또는 내부 위험관리모형에 의한 필요자본 또는 이들을 혼합한 필요자본을 合算하여 산정된다.

2) 資本比率規制의 內容

시장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자본으로는 1988년 BIS 규정에서 제시된 주식, 잉여금 등의 第1次 資本(基本資本, tier 1 capital, core capital)과 第2次 資本(tier 2 capital, supplementary capital) 외에 단기 후순위채 등의 第3次 資本(tier 3 capital)이 있다. 시장위험에만 대비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제3차 자본의 한도는 시장위험에 대비한 제1차 자본의 250% 이내로 이는 다른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제1차 자본은 적어도 약 28.5%((100/350)×100)의 시장위험에 대비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제2차 자본은 제1차 자본을 초과할 수 없는 1988년의 자본비율 규제를 충족시키는 한 제2차 자본 역시 시장위험에 대비한 제1차 자본의 250% 이내에서 제3차 자본과 같이 시장위험을 대비할 수 있다. 제3차 자본을 구성하는 短期 後順位債는 ① 무담보, 후순위 및 전액 입금 ② 발행시 2년 이상의 만기 ③ 감독당국의 허가가 없

는 한 합의 상환일 이전의 상환불가 ④ 이자 또는 원금 지급으로 인하여 최저 자본규제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자 또는 원금 지급불가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BIS는 시장위험에 대비한 최저 필요자본 측정치의 12.5배(8%의 역수)를 시장위험자산으로 간주하고 이를 신용위험가중자산에 합산하여 總 危險加重資産을 算定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資本比率은 信用危險과 市場危險을 고려하여 산정된 총 위험가중자산을 적격의 자본으로 나누어 구해진다. 시장위험에 대비하여 사용되지 않는 제3차 자본의 총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비율은 보고가능 사항이다.

3) 負債性 有價證券(debt securities)

負債性 有價證券은 모든 固定金利 및 變動金利의 負債性 有價證券과 이와 유사한 금융상품을 의미한다. BIS 표준방식에 의하면 부채성 유가증권에 대한 시장위험은 개별 증권별로 포지션에 따른 '特定危險'과 서로 다른 유가증권간 포지션의 상계에 따라 나타나는 자산구성상의 금리위험인 '一般市場危險'으로 구성된다. 특정위험은 상계가 허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행자를 기준으로 5단계로 구분된 필요자본의 비율에 따라 산정된다(〈表 11〉 참조). 일반시장위험은 시장금리의 변화로 인하여 초래되는 손실위험을 의미한다.

BIS는 두 가지 방식에 의하여 일반시장위험에 대한 필요자본을 산정하기로 하였다. 그 두 방식은 '滿期方式(maturity method)'과 '加重平均滿期方式(duration method)'이다.

〈表 11〉 BIS의 負債性 有價證券에 대한 特定危險對比 資本의 加重値

(單位 : %)

	가 중 치	비 고
정부증권	0.00	
적격증권[1]	0.25	잔여만기 : 6개월 이하
	1.00	잔여만기 : 6~24개월
	1.60	잔여만기 : 24개월 초과
기타증권	8.00	

註 : 1) 適格證券은 감독당국이 인정한 2개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투자가능등급을 받은 증권, 또는 1개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투자가능등급을 받고 감독당국이 인정한 다른 1개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투자가능등급 이상의 등급을 받은 증권, 또는 감독당국이 투자적격으로 승인한 증권으로서 해당 증권 발행자가 상장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증권임.

資料 : BIS, "Planned Supplement to the Capital Accord to Incorporate Market Risk," April 1995.

위의 두 방식 모두 市場危險에 대비한 必要資本은 전체 증권거래장부상의 ① 순 포지션 항목 ② 각 기간구분 내의 포지션의 일정비율(vertical disallowance) ③ 기간구분간 포지션의 일정비율(horizontal disallowance)과 ④ 옵션 포지션에 대한 항목의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의 산정은 通貨別로 이루어지며 각 통화별 산정치를 합산하여 총 필요자본이 산정된다.

만기방식의 경우 만기를 기준으로 3영역 13단계(3% 미만 표면금리(coupon rate) 증권에는 15단계)로 구분되어 危險加重値가 다르다(〈表 12〉 참조). 그리고 고정금리 증권의 만기는 잔여만기, 변동금리 증권의 만기는 다음 가격결정 시기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이 危險加重値를 증권거래장부상의 모든 거래에 대한 포지션에 곱하여 위험가중 포지션을 구한 후 이를 합산함으로써 순포지션항목의 필요자본이 구해진다.

다음 단계로서 13단계(또는 15단계)의 각 만기구분 내의 위험가중 롱 포지션과 쇼트 포지션 중 절대값이 작은 포지션의 절대값의 10%(垂直的 相計不許比率)가 각 기간구분 내 포지션의 일정비율 항목('垂直的 相計不許(vertical disallowance)')에 대한 필요자본이다.

〈表 12〉 BIS 滿期方式의 滿期區分과 危險加重値

(單位 : %)

영역	표면금리 3% 이상 증권의 만기	표면금리 3% 미만 증권의 만기	위험가중치
1	1개월 이하	1개월 이하	0.00
	1~ 3개월	1~ 3개월	0.20
	3~ 6개월	3~ 6개월	0.40
	6~12개월	6~12개월	0.70
2	1~ 2년	1.0~ 1.9년	1.25
	2~ 3년	1.9~ 2.8년	1.75
	3~ 4년	2.8~ 3.6년	2.25
3	4~ 5년	3.6~ 4.3년	2.75
	5~ 7년	4.3~ 5.7년	3.25
	7~10년	5.7~ 7.3년	3.75
	10~15년	7.3~ 9.3년	4.50
	15~20년	9.3~10.6년	5.25
	20년 초과	10.6~ 12년	6.00
		12~20년	8.00
		20년 초과	12.50

資料 : BIS, "Planned Supplement to the Capital Accord to Incorporate Market Risk," April 1995.

다음 단계에는 13단계(또는 15단계)가 1년 미만, 1~4년 및 4년 초과(또는 1년 미만, 1~3.6년, 3.6년 초과)의 3영역으로 구분된 각 영역 내에서 위험가중 롱 포지션과 쇼트 포지션별로 합산된 위

험가중 포지션 중 절대값이 작은 포지션의 절대값에 水平的 相計不許比率(〈表 13〉 참조)을 곱하여 '수평적 상계불허(horizontal disallowance)'에 의한 영역내 필요자본이 구해진다.

다음에는 영역 내의 위험가중 포지션을 상계하여 각 영역내 순위험가중 포지션을 구한 후 각 영역과 옆 영역간의 순위험가중 롱 포지션과 쇼트 포지션 중 절대값이 작은 포지션 절대값의 40%가 수평적 상계불허에 의한 옆영역 필요자본이다. 또한 제1영역과 제3영역간에 상계된 순위험가중 롱 포지션과 쇼트 포지션 중 절대값이 작은 절대값의 100%가 水平的 相計不許에 의한 제1영역과 제3영역간 필요자본이다.

〈表 13〉 BIS의 水平的 相計不許比率

(單位 : %)

영 역	영역내 비율	옆 영역간 비율	제1~제3영역간 비율
제1영역	40	40	
제2영역	30	40	100
제3영역	30		

資料 : BIS, "Planned Supplement to the Capital Accord to Incorporate Market Risk," April 1995.

한편 加重平均滿期方式도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差異點은 위험가중치가 다르고 평균만기가 15단계로 구분되며(〈表 14〉 참조) 수직적 상계불허비율이 5%인 점이다.

부채성 유가증권에는 장부외거래를 포함하여 금리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증권거래장부상의 선도금리계약(FRA), 채권선물, 금리 및 외환 스왑, 선물환 포지션 등의 파생금융상품이 포함된다.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시장위험이 측정되기 위해서 시가기준에 의한 포지션으로 전환되는 것이 필요하다.

〈表 14〉 BIS 加重平均滿期方式의 期間區分과 收益率變化 假定値

	기 간 구 분	수익률변화 가정치(%p)
제1영역	1개월 미만	1.00
	1~3개월	1.00
	3~6개월	1.00
	6~12개월	1.00
제2영역	1.0~1.8년	0.90
	1.8~2.6년	0.80
	2.6~3.3년	0.75
제3영역	3.3~4.0년	0.75
	4.0~5.2년	0.70
	5.2~6.8년	0.65
	6.8~8.6년	0.60
	8.6~9.9년	0.60
	9.9~11.3년	0.60
	11.3~16.6년	0.60
	16.6년 초과	0.60

資料 : BIS, "Planned Supplement to the Capital Accord to Incorporate Market Risk," April 1995.

先渡金利契約 등의 先物 및 先渡 契約의 경우 롱 포지션과 쇼트 포지션이 혼합되어 있으며 인도 및 실행 날짜까지가 만기로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4월에 획득된 6월 이후의 3개월물 금리선물에 대한 롱 포지션은 5개월의 롱 포지션과 2개월의 쇼트 포지션이 혼합된 정부발행 증권으로 환산될 수 있다. 스왑 역시 그 성격에 따라 롱 포지션과 쇼트 포지션, 가격결정시기에 따른 만기 구분, 통화구분 등으로 분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變動金利를 받고 固定金利를 지급하는 금리 스왑은 다음 가격결정시기를 만기로 하는 변동금리의 정부발행 증권에 대한 롱 포지션과 고정금리의 정부발행 증권에 대한 쇼트 포지션으로 환산될 수 있다.

派生金融商品간에 발행자, 증권, 통화 및 만기가 일치하면 롱 포지션과 쇼트 포지션간의 상계가 허용된다. 금리 및 통화 스왑, 선도금리계약, 선물환계약, 금리선물 등은 특정위험의 대상이 아니지만 負債性 有價證券과 연계되어 있는 先物契約은 특정위험의 대상이다(〈表 15〉 참조). 그리고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일반시장위험은 파생금융상품의 환산된 포지션에 따라 측정된다.

〈表 15〉 BIS의 金利關聯 派生金融商品의 市場危險

상품종류	특정위험 측정대상	일반시장위험 측정대상
선물거래		
정부증권	×	○(2방향 포지션[1])
회사채	○	○(2방향 포지션[1])
단기금리지수(예 : LIBOR)	×	○(2방향 포지션[1])
장외 선도거래		
정부증권	×	○(2방향 포지션[1])
회사채	○	○(2방향 포지션[1])
단기금리지수	×	○(2방향 포지션[1])
선도금리계약, 스왑	×	○(2방향 포지션[1])
선물환	×	○(통화별 1방향 포지션[1])
옵션		
정부증권	×	○
회사채	○	○
단기금리지수	×	○

註 : 1) 1방향은 「롱」 혹은 「쇼트」를 의미하며 2방향은 「롱」과 「쇼트」를 의미한다.

資料 : BIS, "Planned Supplement to the Capital Accord to Incorporate Market Risk," April 1995.

4) 株式

株式에는 普通株, 주식과 비슷한 轉換證券, 그리고 주식을 사고 파는 契約이 포함된다. 주식에 대한 시장위험은 개별주식 기준의 '특정위험'과 시장 전체 기준의 '일반시장위험'으로 나누어진다. 特定危險은 모든 개별 주식을 기준으로 롱 포지션과 쇼트 포지션의 합인 총포지션이며 一般市場危險은 주식시장 전체를 기준으로 롱 포지션과 쇼트 포지션 합의 차인 순포지션으로 정의된다. 롱 포지션 및 쇼트 포지션은 각 시장가격(market by market)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특정위험에 대하여 8%의 필요자본 비율이 적용되나 포트폴리오가 유동성이 높고 분산이 잘된 경우는 4%의 비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일반시장위험에 대해서는 8%의 필요자본 비율이 적용된다.

주식가격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주식 관련 파생상품(옵션의 경우는 추후 설명) 및 장부외 포지션에 대해서도 必要資本이 算定된다. 파생상품에 대한 특정위험과 일반시장위험의 표준 산식을 구하기 위해 파생상품 포지션은 개념적인 주식의 포지션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개별 주식에 대한 先渡契約이나 先物契約은 반드시 현행 시가로 보고되어야 한다. 주가지수에 대한 선물계약은 해당 주식 포트폴리오의 시가로 보고되어야 하며 주식스왑은 두 개의 개념적 포지션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식옵션과 주가지수옵션은 해당자산과 함께 계상되거나 「델타 플러스」(delta-plus)방식에 의해 일반시장위험의 측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特定危險 및 一般市場危險의 算定時 각 시장에서 동일 주식에 대응되는 포지션은 완전히 상쇄될 수 있다. 분산이 잘된 포트폴리오에 대한 指數에는 순포지션에 대해 2%의 特定危險 必要資本比率이 적용된다. 은행이 동일 지수에 대한 상이한 날짜의 상반된 포지션을 가지는 경우와 날짜는 같으나 두 개의 지수가 상쇄하는 데 충분

한 공통점을 가지는 경우의 先物關聯 裁定(arbitrage)거래는 하나의 지수에만 2%의 특정위험 필요자본비율이 적용된다.

은행이 株價指數 先物契約과 이에 대응하는 주식에 대하여 재정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거래가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분리되어 관리되며 주식구성이 지수 시장가격의 90% 이상이면 最小 必要資本比率은 4%(각 포지션가치의 2%)가 적용된다. 선물계약에 대한 구성증권들의 초과 가치나 구성 증권들에 대한 선물계약의 초과 가치는 각각 롱 포지션이나 쇼트 포지션으로 처리된다.

은행이 해당 주식의 반대 포지션에 대응하여 예금 수취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두 포지션은 상쇄될 수 있다. 단 전환에 대한 어떠한 손실도 標準 資本要求量(standard capital requirement)에 의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5) 外換 및 金 危險(foreign exchange and gold risk)

외환 위험에 대한 필요자본을 구하는 데는 두 段階의 과정이 있다. 즉 단일 통화의 포지션에 대한 위험을 측정하는 것과 다수의 통화에 대한 롱 포지션과 쇼트 포지션에 연관된 위험을 측정하는 두 단계이다.

각 통화의 순「오픈 포지션」을 구하는 데는 순현물 포지션, 순선물 포지션, 보증, 장래의 순소득이나 순지출, 기타 이익 또는 손실, 외국통화옵션의 순「델타」의 등가량 등을 합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ECU와 같이 복합 통화인 경우는 개별적 통화 또는 복합 통화 자체로 보고된다. 이자와 비용은 포지션에 포함되어야 하나 발생 예상액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제외될 수도 있다.

先物換 포지션은 보편적으로 현행 환율에 의해 측정되며 순현가법으로 측정되는 것도 가능하다. 대응된 외환 포지션은 환율의 변화에 대한 위험은 방지할 수 있으나 자본비율의 적정성을 유지해 주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은행이 自國의 通貨로 자본비율을 정하고 완전히 대칭된 외국 통화 자산과 부채의 포트폴리오를 소유하는 경우에 자국 통화의 가치가 하락하면 자본비율도 하락할 것이다. 은행이 자본비율에 대한 환율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헤징」을 하는 포지션에는 필요자본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본을 측정할 때 제외되는 항목에 관련된 포지션에는 必要資本 比率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환위험을 측정하는 데 모든 통화를 동일하게 처리하는 簡便(shorthand)方式과 은행의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각각 외국 통화에 실제 위험 정도를 측정하는 內部(internal)模型方式이 있다. 간편방식에서는 각 외국 통화와 금의 순 포지션 금액(또는 순현재가치)이 보고되는 통화의 현재 환율로 환산된다.

전체 순포지션(overall net open position)은 순쇼트 포지션의 합계와 순롱 포지션의 합계 중에 큰 값에 금의 순포지션의 절대값을 합하여 구한다. 필요자본 비율은 이 전체 순포지션의 8%이다.

외환업무에 대한 필요자본 규정이 除外되는 경우도 있다. 중요한 외환업무를 하지 않고 자신의 계정으로는 외환포지션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은행의 경우에는 필요자본 규정이 제외될 수 있다.

6) 商品危險(commodities risk)

상품위험이란 귀금속, 농산물, 석유 등의 상품 포지션을 보유하는 경우에 발생 가능한 危險을 말한다. 상품이나 상품 파생상품의 경우는 이자율이나 환율보다는 유동성이 낮으므로 수요와 공급의 변화는 가격과 가격 변동성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상품의 가격 위험은 보다 복잡하고 변동성이 크다. 상품위험에는 유사 상품의 가격이 변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基礎危險(basis risk), 계약 이행의 비용에 영향을 주는 利子率危險(interest risk), 선도가격이 변동할 위험인 先渡갭危險(forward gap risk) 등이 있다.

상품 포지션 위험을 측정하는 데는 표준방식, 단순방식 및 내부 모형방식의 세 가지 방식이 있다. 標準方式의 경우 은행은 우선적으로 각 상품의 포지션(현물과 선도)을 표준화된 기준(배럴, 킬로, 그램 등)으로 나타내어야 하며, 각 상품의 순포지션은 현행 환율에 의해 해당 국가 통화로 나타내어야 한다. 그리고 시간 기준대(time-band) 가중치(spread rate)에 의하여 위험에 따른 필요 자본을 산정한다(〈表 16〉 참조). 각 시간 기준대에 대응된 포지션의 합을 우선 현물가로 곱하고 두번째로 각 시간 기준대의 가중치를 곱하여 필요자본을 산정한다. 殘餘 순포지션은 그 다음 시간 기준대의 위험으로 이전되며 이때 殘餘 순포지션에 대한 가중치가 0.6%인 필요자본이 가산된다.

이러한 과정 후에 은행은 롱 포지션이나 쇼트 포지션 중 하나만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에는 15%의 필요자본 비율이 적용된다.

〈表 16〉 BIS의 商品危險에 대한 時間基準帶別 加重値

(單位 : %)

시간 기준대	가중치(spread rate)
0 ~ 1개월	1.5
1 ~ 3개월	1.5
3 ~ 6개월	1.5
6 ~ 12개월	1.5
1 ~ 2년	1.5
2 ~ 3년	1.5
3년 이상	1.5

資料 : BIS, "Planned Supplement to the Capital Accord to Incorporate Market Risk," April 1995.

상품가격의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파생상품과 장부외 항목들은 개념적인 상품포지션으로 나타내어 위험이 산정된다. 先物契約과 先渡契約은 결제일을 기준으로 만기가 정하여진다.

고정된 가격과 현행 시장가격으로 이루어지는 상품스왑은 개별 계약포지션의 연결로 간주되며, 이때 은행이 고정된 금액으로 지불하고 변동되는 금액으로 받는 경우는 롱 포지션이 되고 반대의 경우는 쇼트 포지션이 된다. 다른 상품간의 상품스왑은 다른 상품으로 처리된다.

단순방식의 경우에는 각 상품의 순포지션에 15%의 필요자본 비율이 적용된다. 또한 은행은 기초 위험, 이자율 위험, 선도갭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어떤 특정 상품에 대한 롱 포지션과 쇼트 포지션의 합계인 총포지션의 현물가격에 3%의 필요자본 비율이 가산된다.

7) 옵션

BIS는 옵션이 다양한 形態로 운영되고 있으며 옵션의 가격위험을 측정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각국 감독당국에게 몇 가지 대안을 허용하고 있다. 즉 옵션을 구입하기만 하는 은행에게는 '單純方式(simplified approach)'이 허용되며 옵션을 발행하기도 하는 은행에게는 '仲介方式(intermediate approach)' 또는 '綜合的 危險管理方式(comprehensive risk management model)'이 허용된다.

옵션에도 발행자와 관련된 '특정위험'에 따른 필요자본이 부과된다(〈表 15〉 참조). 통화 옵션에 대한 特定危險 對比 必要資本比率은 8%이며 상품 옵션에 대한 특정위험 대비 필요자본비율은 15%이다.

單純方式에 의하면 「롱 캐쉬－롱 풋 포지션」 또는 「쇼트 캐쉬－쇼트 콜 포지션」의 경우 필요자본은 대상증권의 시장가치에 대상증권의 특정위험과 일반시장위험에 대비한 필요자본비율을 곱한 값에서 옵션 실행에 의한 수입금을 차감하여 구해진다. 「롱 콜」 또는 「롱 풋」의 경우 필요자본은 대상증권의 시장가치에 대상증권의 특정위험과 일반시장위험에 대비한 필요자본비율을 곱한 값과 옵션의

시장가치 중 작은 값으로 구해진다.

仲介方式에는 「델타 플러스」(delta－plus)방식과 「시나리오」(scenario)방식이 있다. 델타 플러스방식에 의하면 옵션 발행은행은 옵션포지션에 대하여 「델타」(delta) 「감마」(gamma) 및 「베가」(vega) 위험대비 필요자본을 합산하여 총 필요자본을 구한다. 델타, 감마 및 베가의 값은 각국 감독당국이 인정한 모형 혹은 은행내부 옵션가격 결정모형에 의하여 산정된다. 델타는 대상증권 가격의 1단위 변화에 대한 옵션가격의 敏感度(sensitivity)이고 감마는 대상증권 가격의 1단위 변화에 대한 델타의 민감도이며, 베가는 대상증권 가격변동성의 1단위 변화에 대한 옵션가격의 민감도이다.

負債性 有價證券 또는 金利 關聯 옵션의 경우 델타에 의하여 조정된 델타가중포지션의 기간구분은 계약 이행 시점과 대상증권 만기 시점의 두 시점으로부터 결정된다. 예를 들어 4월에 6월 이후 3개월물 금리선물의 콜 옵션구입은 5개월 만기의 델타조정 롱 포지션과 2개월 만기의 델타조정 쇼트 포지션으로 정리되며 동일 옵션의 발행은 2개월 만기의 델타조정 롱 포지션과 5개월 만기의 델타조정 쇼트 포지션으로 정리된다.

「캡」(cap) 또는 「플로어」(floor)의 變動金利 派生金融商品은 변동금리증권과 유럽형 옵션의 혼합으로 정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5% 캡의 6개월물 LIBOR에 연계된 3년만기 변동금리채의 보유는 6개월마다 가격이 결정되는 부채성 유가증권과 실행가격이 15%인 5개의 선도금리계약에 대한 콜 옵션발행으로 정리될 수 있다.

감마위험에 대비한 필요자본은 쇼트 포지션에 대한 순감마의 절대치에 13단계의 기간구분에 대하여 차이를 둔 危險加重値(〈表 17〉 참조)와 대상증권 시장가치의 제곱치를 곱하여 구해진다. 베가위험에 대비한 필요자본은 베가치에 ±25%의 변동성을 가정하여 조정된 변동치를 곱하여 구해진 절대치이다.

〈表 17〉 BIS의 감마危險對比 危險加重値

기간구분	조정된 가중평균만기	가정된 금리변화율(%)	감마대비 위험가중치(%)[1]
1개월 미만	0.00	1.00	0.00000
1~3개월	0.20	1.00	0.00020
3~6월	0.40	1.00	0.00080
6~12개월	0.70	1.00	0.00245
1~2년	1.40	0.90	0.00794
2~3년	2.20	0.80	0.01549
3~4년	3.00	0.75	0.02531
4~5년	3.65	0.75	0.03747
5~7년	4.65	0.70	0.05298
7~10년	5.80	0.65	0.07106
10~15년	7.50	0.60	0.10125
15~20년	8.75	0.60	0.13781
20년 초과	10.00	0.60	0.18000

註 : 1) 계산식 $=(1/2)\times$(조정된 가중평균만기$\times$가정된 금리변화율)^2 $\div 100$

資料 : BIS, "Planned Supplement to the Capital Accord to Incorporate Market Risk," April 1995.

주식관련 옵션의 경우도 이와 같다. 단 감마위험대비 필요자본은 純감마의 絶對値에 개별주식의 경우 危險加重値 0.72%($=0.5\times12\%^2$ ($=0.5\times$가정된 대상주식 가격변화율^2))(주식지수의 경우 0.32% ($=0.5\times8\%^2$))와 대상주식 시장가치의 제곱치를 곱하여 산정된다.

외환, 금 및 상품 관련 옵션의 경우도 이와 같다. 단 외환 및 금 관련 옵션의 경우 감마위험대비 위험가중치는 0.32%, 상품관련 옵션의 경우 감마危險對比 危險加重値는 1.125%이다.

한편 시나리오방식에 의하면 옵션危險對比 必要資本은 대상 금리 및 가격의 변화와 그 변동성이 일정 비율로 동시에 변할 때 변화하

는 옵션 資産構成의 價値를 평가하여 산정된다. 보통 금리변화의 단위는 3영역 기간구분에서 제1영역의 경우 100bp(basis point), 제2영역의 경우 90bp 그리고 제3영역의 경우 75bp이고 환율변화의 단위는 ±8%, 주가변화의 단위는 ±12%(주가지수의 경우 ±8%) 및 상품가격변화의 단위는 ±15%이며 가격변동성 변화의 단위는 ±25%이다. 다음에 각 위험요인에 있어서의 기준량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구성가치의 최대 손실치를 합하여 시나리오방식에 의한 필요자본이 산정된다.

8) 市場危險 測定을 위한 內部模型(internal models)

각 은행은 內部模型에 의한 시장위험 측정이 허용되는데 내부모형을 이용하기 위한 감독당국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은행의 위험관리 체계는 개념적으로 건전하여야 하고 성실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② 은행은 거래 부문뿐만 아니라 위험 관리와 감사 관리 부문에서 정교한 모형을 사용할 수 있는 숙련된 인원을 확충하여야 한다.

③ 은행의 모형에는 손실의 합리적인 정확성에 대한 감독당국의 증명된 판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은행은 정규적인 經營管理 點檢을 하여야 한다.

⑤ 감독당국은 은행의 내부모형에 대해 사전적인 감시 기간을 정하여 실지 조사를 행할 수 있다.

그리고 내부모형을 사용하기 위한 質的 基準들이 다음과 같이 요구된다.

① 은행은 獨立的인 危險管理 組織을 유지하여 매일 매일의 보고서를 거래 담당부서의 간섭없이 상부 관리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위험관리 조직은 정규적으로 危險管理 結果에 대한 評價를 시

행하여야 한다.

③ 상위 관리자는 위험관리 과정의 중요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며 매일 매일의 보고서는 상위 관리자에 의해 점검되어야 한다.

④ 은행의 내부위험 측정모형은 銀行의 日別 管理過程을 잘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⑤ 위험측정모형은 內部去來와 危險限度(exposure limits)를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정례적이고 엄격한 업무 검사가 은행의 위험을 측정하기 위한 분석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⑦ 은행 내부의 정책, 통제 절차 등에 관한 서류가 위험측정 제도의 운영에 일치되어야 한다.

⑧ 위험관리 과정의 검정이 正規的으로(이상적으로는 최소 1년에 한번 이상) 이루어져야 하고 그 내용으로는 위험관리 자료 및 절차의 적절성, 위험관리 기구의 구성, 시장위험 관리의 日別(daily) 관리, 일선 및 후선 직원에 의하여 사용되는 모형 및 제도의 승인절차, 위험관리 과정의 특정 변화에 대한 영향, 시장위험 중 위험관리모형에 의해 설명되어지는 정도, 경영정보처리 과정의 통합성, 포지션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 자료 및 정보의 적정성과 독립성, 변동성과 상관관계에 대한 가정의 정확성, 위험 전달과정의 산식과 측정의 정확성, 逆檢定(back-testing)에 의한 모형의 정확성에 대한 확인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은행이 내부의 시장위험 측정체계를 사용하는 데 중요한 점은 적당한 시장위험 요소를 규명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基準들이 사용되어야 한다.

① 이자율과 관련된 위험측정을 위해 일반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만기에 따른 收益率 曲線이 만들어져야 하며, 수익률 곡선을 만들기 위해 고려되는 위험은 최소한 여섯 개 이상

이어야 한다.

② 외환 위험과 관련된 위험측정 체계는 個別通貨와 연관되어 있는 위험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각 주식가격과 관련된 위험측정 체계는 株式市場의 危險 要因이 반영되어야 한다.

④ 상품 위험과 관련하여 은행이 상품관련 거래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모형에 시장조건의 변동에 의한 효과와 상품 보관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그 밖에 은행들은 자신들의 모형을 만드는 데 어느 정도의 신축성을 가질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양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危險價値(value-at-risk)는 日別 基準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② 위험가치는 99%의 신뢰성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하고 최소 보유 기간은 10거래일이며, 위험가치를 구하기 위한 표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③ 은행은 자료를 최소한 3개월에 한번 이상 수정하여야 하며 시장에 중요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특정모형 사용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은행은 자유롭게 分散-共分散 方法, 역사적 시뮬레이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등에 기초한 모형을 이용할 수 있다.

⑤ 은행은 위험 집단별(이자율 위험, 환 위험, 주식 위험, 상품 위험)로 과거의 자료를 통해 실증적인 상관관계를 구하여야 한다.

⑥ 은행은 또한 옵션에 의한 非線形의 독특한 위험에 대해서도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⑦ 은행은 위에서 구한 危險價値의 60일치의 값에다 가중치를 곱한 값과 직전 거래일의 자본 필요량 중에서 큰 값 이상을 자본 필요량으로 보유하여야 하며 가중치는 감독당국이 정한다.

외부 감사자나 감독당국이 은행의 내부 모형을 認准할 때 다음과 같은 段階가 필요하다.

① 내부 가치측정 과정이 만족할만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認證을 해야 한다.

② 옵션이나 여타 복잡한 도구에 대한 계산식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③ 내부모형이 은행의 활동성과 영업 지역의 측면에서 적절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④ 내부측정 체계의 逆檢定 結果가 잠재적인 손실을 측정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을 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위험측정 체계를 위한 정보들이 轉換 可能性이 있고 이용이 용이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內部模型과 標準方式을 結合하여 사용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필요하다.

① 각각의 위험 요소들은 두 개의 모형에서 모두 적용 가능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감독당국이 특정한 이유에 의해 두 모형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결합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 표준 방식과 내부 모형에서 사용된 시장위험에 대한 요소들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④ 두 모형에 의해 평가된 필요자본은 單純 加算方法에 의해서 합산되어야 한다.

다. BIS와 IOSCO의 合意

1) 背景

銀行과 證券會社는 業務의 差異 때문에 자본규제의 내용이 상이하였으나 점차 엄격한 업무의 구분이 퇴색함에 따라 은행과 증권회사 상호간의 공정한 경쟁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통적으로 적용

될 통일된 자본규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BIS와 國際證券監督委員會(IOSCO)는 통일된 자본규제를 설정하기 위하여 국제업무를 수행하는 은행 또는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점진적이긴 하지만 부분적으로 자본규제에 있어서 合意를 보이고 있다.

2) 合意 內容

그 동안 은행 감독당국은 은행의 청산능력을 중시하여 信用危險의 규제에 중점을 둔 반면 증권회사 감독당국은 증권회사의 시장성 증권(marketable securities)의 보유 및 거래를 중시하여 市場危險의 규제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은행 감독당국은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분리하여 측정하는 '分離測定方式(building-block approach)'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증권회사 감독당국은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綜合測定方式(comprehensive approach)'을 채택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兩 監督當局 모두 分離測定方式을 채택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주식의 경우 시장위험과 개별발행자위험(신용위험)을 종합하여 측정하는 종합측정방식도 허용되는데 이때 이 방식에 의한 자본수준이 분리측정방식에 의한 필요자본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短期後順位債券이 자본으로 산정될 경우 만기시 상환이 금지될 수 있다는 조건이 채권발행시에 명시화되어야 하는 점과 短期後順位債券의 發行限度는 자기자본의 250%인 점이 BIS와 IOSCO의 합의 내용이다. 그리고 주식포지션위험에 대비한 필요자본의 경우 총포지션과 순포지션 각각의 필요자본을 합하여 필요자본을 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합의되었다.

2. 美國

가. 銀行

1987년 이후 미국 은행(commercial banks)은 두 가지 資本規制를 받고 있다. 이는 單純資本比率(capital－assets ratio 또는 leverage ratio)規制와 危險加重資本比率(risk－based capital ratio)規制이다.

1991년 聯邦預金保險公社改善法(FDIC Improvement Act)에 의하여 산정된 단순자본비율은 銀行 資本充實度의 평가 기준이 된다. 1991년 연방예금보험공사개선법에 의한 자본규제는 은행 외에 저축기관(thrifts)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었다.

이와 같은 단순자본비율은 基本資本(core capital)/資産으로 산정된다. 기본자본은 보통주의 장부가액, 비누적적 영구우선주(noncumulative perpetual preferred stock)와 일정조건을 만족시키는 누적적 영구우선주(qualifying cumulative perpetual preferred stock)의 장부가액, 연결자회사의 자기자본 중 소액주주 지분(minority interest in equity accounts of consolidated subsidiaries) 등을 합하여 산정된다.

한편 바젤합의(Basel Agreement)에 따라 1993년 이후 은행은 危險加重資本規制를 받게 되었다. 즉 위험가중자산에 대비하여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을 합한 총 자본이 8% 이상이어야 하며 기본자본은 4% 이상이어야 한다. 자기자본 구성항목은 바젤합의에 준하고 있으며 이는 〈表 18〉과 같다.

危險加重資産 역시 바젤합의에 따라 장부내 위험가중자산과 장부외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누어 산정한 후 이 둘을 합하여 결정된다. 帳簿內 資産의 危險加重値는 각 자산의 위험도에 따라 0, 20, 50, 100%의 4가지로 나누어지며 각 위험도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는 바젤합의에 의한 내용과 동일하다. 또한 帳簿外 危險加重資産도 바젤합의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된다. 한편 市場危險에 대비하여 純財

産－資産露出(net worth－assets exposure)이 1%를 초과하는 부분만큼 추가의 자기자본이 요구된다.

〈表 18〉 美國 銀行의 自己資本 構成項目

구 성 항 목	관 련 사 항
〈Core(Tier 1) Capital〉	위험가중자산의 4% 이상
Common Stockholders' Equity	
Qualifying Cumulative & Non-cumulative Perpetual Preferred Stock	Common Stock, Minority Interests, Qualifying Perpetual Preferred Stock 합의 25% 이하로 제한
Minority Interest In Equity Accounts Of Consolidated Subsidiaries	
공제 : Goodwill	
〈Supplementary(Tier 2) Capital〉	Tier 1 Capital의 100% 이하로 제한
Allowance For Loan & Lease Losses	위험가중자산의 1.25% 이하로 제한
Perpetual Preferred Stock	
Hybrid Capital Instruments, Perpetual Debt & Mandatory Convertible Securities	
Subordinated Debt & Intermediate-term Preferred Stock(5년 이상의 가중평균만기)	Tier 1 Capital의 50% 이하로 제한
Revaluation Reserves(Equity & Buildings)	자본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전체 자본 충실도 평가시 고려
〈Tier 1, Tier 2의 합에서의 공제항목〉	
Investments In Unconsolidated Subsidiaries	통상 1/2은 Tier 1 Capital에서 나머지 1/2은 Tier 2 Capital에서 공제
Reciprocal Holdings Of Banking Organizations' Capital Securities	
감독당국이 결정하는 기타 공제항목	
〈총자기자본(Tier 1+ Tier 2－공제항목)〉	위험가중자산의 8% 이상

資料 : Federal Reserve Board of Governors.

〈表 19〉 美國 銀行의 資本充實度 區分

	위험가중자산 -자기자본비율	위험가중자산 -기본자기자본비율	단순자기자본비율	기 타
우 수	10% 이상 &	6% 이상 &	5% 이상 &	기타자기자본관련 사항 만족
적 정	8% 이상 &	4% 이상 &	4% 이상 &	우수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함.
미 흡	8% 미만 또는	4% 미만	또는 4% 미만	
상당히 미흡	6% 미만 또는	3% 미만	또는 3% 미만	
심각하게 미흡				총자산대비 유형자기자본비율이 2% 이하

資料 : Federal Reserve Board of Governors.

단순자본비율과 위험가중자본비율을 기준으로 은행의 資本充實度는 종합적으로 5단계로 구분된다. 즉 우수(well capitalized), 적정(adequately capitalized), 미흡(undercapitalized), 상당히 미흡(significantly undercapitalized) 및 심각하게 미흡(critically undercapitalized)의 5단계이다(〈表 19〉 참조). 1993년 이후 감독당국은 이와 같은 자본충실도에 따라 〈表 20〉과 같은 早期是正措置(prompt corrective action)를 시행하고 있다.

〈表 20〉 美國 監督當局의 早期是正措置 內容

자본충실도	강 제 조 치	임 의 조 치
1. 우수		
2. 적정	1. FDIC 승인 없이 Brokered Deposits 불가	
3. 미흡	1. 배당 및 Management Fees 금지 2. 자기자본증대 요청 3. 자산증대제한 4. 인수, 지점, 신규업무 승인 요구 5. Brokered Deposits 불가	1. 기타 자기자본강화조치 2. 계열회사간 거래제한 3. 예금금리제한 4. 특정업무제한 5. 기타 조기시정조치에 관련된 조치
4. 상당히 미흡	1. 미흡의 경우와 동일 2. 기타 자기자본강화 조치 3. 계열회사간 거래 제한 4. 예금금리제한 5. 임원봉급제한	1. 미흡한 경우의 임의조치 2. 조치를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재처리 3. 필요시 심각하게 미흡한 경우의 조치
5. 심각하게 미흡	1. 상당히 미흡의 경우와 동일 2. 90일내 관재조치 3. 심각하게 미흡하게 된 이후 270일 중 평균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심각하게 미흡한 경우 파산관재조치 4. 후순위부채의 상환금지 5. 특정업무제한	

資料 : Federal Reserve Board of Governors.

나. 證券會社

證券去來委員會(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EC)는 '純資本規則(Net Capital Rule)'을 制定하여 증권회사의 자본을 규제하고 있다. 순자본규칙에 의하면 증권회사는 순자본의 최저한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기본방식(basic method)'에 의한 최저한도는 부채총액의 6 $^{2}/_{3}$% 또는 25만달러이며 '對替方式(alternative method)'에 의한 최저한도는 고객관련 받을 금액의 2% 또는 1만달러가 적용된다.

純資本은 장부상의 순재산(net worth)에서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 등의 고정자산과 매매가 활발하지 않은 자산을 제외하며 그 밖에 유가증권 및 상품 포지션의 시장가치에 대한 일정 '評價損 比率(haircuts)'을 削減하는 등의 조정에 의하여 산출된다. 평가손 비율은 각 자산에 대한 가격의 변동성, 유동성, 신용위험 등이 반영되어 결정된다. 주식의 경우 평가손 비율은 롱 포지션과 쇼트 포지션 중 큰 쪽 시장가치의 15%이며 작은 쪽이 큰 쪽의 4분의 1을 초과할 때 작은 쪽과 큰 쪽 4분의 1과의 차이에 대한 시장가치의 15%이다.

한편 特定株式이 暫定的 純資本의 10%를 초과할 때는 추가로 評價損이 이루어지며 기본방식에 의한 추가 평가손 비율은 정상 평가손의 50%이고 대체방식에 의한 추가 평가손 비율은 15%이다. 우선주의 경우 평가손 비율은 롱 포지션과 쇼트 포지션 중 큰 쪽 시장가치의 10%이다.

정부증권의 경우 證券의 殘餘滿期에 따라 評價損 比率이 다르며 (〈表 21〉 참조) 제1단계 평가손은 각 잔여만기의 小領域에 대한 롱 포지션과 쇼트 포지션의 순포지션에 평가손 비율을 곱하여 산출되며, 제2단계 평가손은 증권의 잔여만기를 4그룹의 大領域(〈表 21〉 참조)으로 구분한 후 各 大領域別 第1段階 評價損의 絶對値로

써 산출된다. 그 밖에 정부증권의 경우 증권 잔여만기의 대영역별 롱 포지션평가손과 쇼트 포지션평가손 중 작은 쪽의 50%가 추가 평가손이다. 이에 따라 정부증권에 대한 평가손은 제2단계 평가손과 추가 평가손의 합으로 산출된다.

轉換不可 會社債의 경우 채권의 잔여만기에 따라 評價損 比率이 다르며(〈表 22〉 참조) 평가손은 각 잔여만기의 영역에 대한 롱 포지션과 쇼트 포지션의 純포지션에 평가손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다. 그 밖에 전환불가 회사채의 경우 회사채간 또는 회사채와 정부증권간에 쇼트 포지션에 의한 롱 포지션의 헤징평가손이 인정되며 잔여만기에 따라 헤징평가손 비율(〈表 22〉 참조)이 다르고 헤징평가손은 롱 포지션과 쇼트 포지션의 시장가치 중 작은 쪽에 헤징평가손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다. 전환채권의 경우 시장가치가 명목가치의 100% 이상이면 전환채권의 평가손은 주식의 경우와 같으며 100% 미만이면 이의 평가손은 전환불가 회사채의 경우와 같다.

한편 롱 옵션에 대한 評價損 比率은 옵션市場價值의 50%이다. 「헤지 콜」은 쇼트 포지션을 헤징한 롱 콜 옵션으로서 이의 평가손은 옵션가격이 外價格(out of money)에 있으면 대상증권 시장가치의 30%와 外價格額(out of money amount) 중 작은 쪽이다. 「헤지 풋」은 롱 포지션을 헤징한 롱 풋 옵션으로서 이의 평가손은 옵션가격이 外價格에 있으면 대상증권 시장가치의 30%(대체방식의 경우 15%)와 外價格額 중 작은 쪽이다.

쇼트 옵션에 대한 평가손 비율은 옵션 시장가치의 75%이다. 「커버드 쇼트 옵션」은 롱 포지션에 대한 쇼트 콜 옵션 또는 쇼트 포지션에 대한 쇼트 풋 옵션으로서 이의 평가손은 대상증권 시장가치에서 內價格額(in the money amount)을 차감한 값의 30%이다.

〈表 21〉 美國 證券會社의 政府證券 評價損 比率

(單位 : %)

잔 여 만 기	평가손 비율
제1 대영역	
3개월 미만	0
3~6개월	0.5
6~9개월	0.75
9~12개월	1
제2 대영역	
1~2년	1.5
2~3년	2
제3 대영역	
3~5년	3
5~10년	4
제4 대영역	
10~15년	4.5
15~20년	5
20~25년	5.5
25년 이상	6

資料 :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純「롱 스프레드」는 롱 옵션의 시장가치가 쇼트 옵션의 시장가치를 초과하는 동류의 롱 옵션과 쇼트 옵션의 결합으로서 이의 평가손은 純市場價値의 50%와 계약건당 25달러 중 큰 쪽이다. 純쇼트 스프레드는 쇼트 옵션의 시장가치가 롱 옵션의 시장가치를 초과하는 동류의 롱 옵션과 쇼트 옵션의 결합으로서 이의 評價損은 純市場價値의 75%와 계약건당 37.50달러 중 큰 쪽이다.

「롱 스트레들」(롱 풋과 롱 콜의 결합)의 評價損은 「풋」과 「콜」의 시장가치 중 큰 쪽의 50%이다. 「쇼트 스트레들」(「쇼트 콜」과 「쇼트 풋」의 결합)의 평가손은 「콜」 시장가치의 75%, 「풋」시장가

치의 75%와 쇼트 옵션 계약건당 75달러 중 큰 쪽이다.

그리고 商品去來의 경우 評價損 比率은 現物商品과 先物商品에 대한 시장가치의 20% 등이다. 지방정부증권의 경우 평가손 비율은 잔여만기에 따라 0~7%이며 평가손은 각 잔여만기의 영역에 대한 롱 포지션과 쇼트 포지션중 큰 쪽 시장가치에 평가손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다.

〈表 22〉 美國 證券會社의 轉換不可 會社債의 評價損 比率

(單位 : %)

잔여만기	평가손 비율	
1년 미만	2	
1~2년	3	
2~3년	5	
3~5년	6	
5~10년	7	
10~15년	$7^1/_2$	
15~20년	8	
20~25년	$8^1/_2$	
25년 이상	9	
헤징의 경우	회사채와의 헤징	정부증권과의 헤징
5년 미만(6개월 이내)	$1^3/_4$	$1^1/_2$
5~10년(9개월 이내)	3	$2^1/_2$
10~15년(2년 이내)	$3^1/_4$	$2^3/_4$
15년 이상(10년 이내)	$3^1/_2$	3

資料 :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投資會社證券의 경우 評價損 比率은 증권에 따라 롱 포지션과 쇼트 포지션 중 큰 쪽의 2%, 7% 혹은 9%이다. CP, BA(은행인수어음) 및 CD의 경우 評價損 比率은 만기에 따라 1/8~1/2%이며 評價損은 만기의 영역별로 롱 포지션과 쇼트 포지션 중 큰 쪽에 평가

손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다.

한편 純資本規則에 따른 早期警報 水準 이하로 악화되는 경우 금전배당 등의 일정유형의 자기자본 감소행위 및 3개월 이내 만기도래 後順位借入金의 償還이 禁止된다. 조기경보 수준은 ① 순자본(영업용순자본－시장 및 거래상대방 위험)이 영업종류별 최소필요액(일반 증권회사 25만달러)의 120% 미만인 경우, ② 순자본이 위험(시장 및 거래상대방 위험)의 25% 미만인 경우, ③ 순자본이 부채액의 10분의 1(최저의무기준 15분의 1) 미만인 경우이다. 대체방법을 선택한 회사는 순자본이 대고객채권의 5%(최저의무기준 2%) 미만이다.

금전배당 등의 일정유형의 자기자본 감소행위로 1개월 동안 순자본의 30% 이상이 감소할 경우 SEC는 이를 일시적(20일)으로 制限할 수 있다. 또한 최저의무기준 이하로 순자본이 감소하는 경우 SEC는 등록정지 및 청산개시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이 밖에 자율규제기관(NYSE, NASD 등)이 조기경보 수준에 이른 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회원조치 등을 수행한다.

다. 保險會社

1) 生命保險會社

全國保險監督院協會(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NAIC)도 은행감독당국 등의 영향을 받아 危險加重 資本規制를 위한 模型을 개발하여 1992년 12월에 채택한 후 이의 사용을 각 州 감독당국에게 권고하였다. NAIC의 모형에 의하면 보험업자가 직면하는 위험은 資產危險(C0, C1), 保險危險(C2), 金利危險(C3) 및 經營危險(C4)의 4가지로 구분된다.

資產危險(Asset Risk)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대한 신용위험을 의미한다. 이는 各 資產의 帳簿價格에 信用危險의 比重(〈表 23〉 참조)을 곱하여 자산위험에 대한 필요자본이 산출된다.

자산위험은 관계회사(affiliated) 투자에 대한 신용위험(C0)과 기타 신용위험(C1)으로 나뉜다. 그리고 채권의 발행자 수, 자산 집중도 등을 고려하여 자산위험에 대한 필요자본이 조정된다. 예를 들어 채권투자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발행자 수가 적을수록 채권투자가 적절히 분산되지 못하여 신용위험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발행자 수가 적을수록 많은 자본이 필요하도록 필요자본이 산출된다. 즉 발행자의 수가 50일 때까지는 2.5의 비중이 적용되고 다음 50에는 1.3의 비중이, 다음 300에는 1.0의 비중이 적용되며 400 이상에는 0.9의 비중이 적용되어 전체 분산도(size factor)는 각 발행자 수에 비중을 곱한 후 이를 총 발행자 수로 나누어 산출된다. 이로부터 채권에 대한 危險加重資産對比 必要資本은 각 채권에 신용위험 비중을 곱한 값의 총 합에 채권의 자산집중도를 곱하여 산출된다.

抵當貸出(mortgages)의 경우에는 신뢰할 만한 위험도평가제도가 없기 때문에 과거의 經驗에 의하여 抵當貸出의 危險度를 조정한다. 즉 과거의 平均 延滯率을 보험산업 전체의 평균 연체율로 나누어 구한 經驗調整値(experience adjustment factor)를 저당대출의 장부가격과 신용위험비중을 곱한 값에 다시 곱하여 抵當貸出의 必要資本이 산출된다.

또한 투자자산의 발행자 중 투자자산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10개의 발행자를 대상으로 이들 발행자의 자산을 대상으로 별도의 필요자본이 추가된다. 즉 10大 發行者의 각 자산에 자산별로 비중에 차이를 둔 자산별 위험비중치를 곱하여 추가 필요자본이 산정된다.

保險危險(Insurance Risk)은 사망 내지 질병의 위험에 대한 예상하지 못한 변화의 위험을 의미한다. 보험위험의 대상은 건강대상의 보험료, 건강대상의 지급준비금, 사망 보험금, 보험료 안정 준비금 등이며 이들 보험위험 대상에 보험위험의 비중을 곱하여 보험위험에 대한 필요자본이 산출된다.

〈表 23〉 美國 生命保險會社의 主要資產에 대한 資產危險 比重値

(單位 : %)

자 산	자산위험비중치
채권	
국공채	0, 0.3
1등급 : AAA~A	0.3
2등급 : BBB	1
3등급 : BB	4
4등급 : B	9
5등급 : CCC	20
6등급 : 나머지	30
농촌 저당대출	3, 6
보증 저당대출	0.1, 0.2
주택 저당대출	0.5, 1
상업 저당대출	3, 6
연체, 저당권 상실 등 저당대출	20, 100
비관련회사 우선주식	
1등급	2.3
2등급	3
3등급	6
4등급	11
5등급	22
6등급	30
비관련회사 보통주식	30
부동산	10, 15
기타 장기자산	20, 30
현금, 단기투자자산	0.3
담보대출 등	5
재보험	0.5, −0.5
장부외거래	
1등급	0.3
2등급	1
3등급	4
4등급	9
5등급	20
6등급	30

資料 :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金利危險(Interest Rate Risk)은 金利變化에 따른 損失을 의미한다. 자산과 부채의 만기가 일치할수록 금리위험이 적으므로 금리위험을 회수 규정에 따라 低危險(0.75%의 필요자본), 中危險(1.5%의 필요자본) 및 高危險(3%의 필요자본)으로 구분하여 금리위험에 대한 필요자본이 산출된다.

經營危險(Business Risk)은 保險業者의 支給不能危險을 의미하며 보험료 수입을 대상으로 경영위험대비 필요자본이 산출된다. 경영위험에 대한 필요자본은 州 保險保證基金에의 최대 납부규모인 생명·연금대상 보험료의 2%, 건강대상 보험료의 0.5% 등이다.

5가지 위험에 대한 필요자본에 의하여 最低의 總 危險加重 必要資本(TRBC)은

$$TRBC = \sqrt{(C1+C3)^2+C2^2} + C0 + C4$$

와 같이 산출된다. 산출식에서는 C1위험과 C3위험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등의 相互關係가 고려되었다.

규제당국은 TRBC의 50%를 위험가중 필요자본의 公認된 管理水準(Authorized Control Level Risk-Based Capital : ACL-RBC)으로 정하고 ACL-RBC의 70%를 위험가중 필요자본의 強制的 管理水準(Mandatory Control Level Risk-Based Capital : MCL-RBC)으로 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또한 규제당국은 ACL-RBC의 2배를 보험회사 자체의 수정 수준(Company Action Level Risk-Based Capital : CAL-RBC), ACL-RBC의 1.5배를 규제에 의한 수정수준(Regulatory Action Level Risk-Based Capital : RAL-RBC)으로 정하고 있다.

實際資本과 危險加重資產對比 必要資本(RBC)을 비교하여 규제당국은 적절한 措置를 취하게 된다. 실제자본은 자본 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부가치에 자본항목별 비중을 곱하여 산출된다(〈表 24〉 참조).

실제자본이 ACL-RBC의 2.0~2.5배이면 보험회사는 추세「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한다. 추세 테스트는 현재의 실제자본과 ACL-RBC의 차이와 과거 3년간의 실제 자본과 ACL-RBC의 차이를 比較하는 것인데 그 중 가장 큰 값이 ACL-RBC의 1.9배에 미달하면 이는 보험회사 자체의 수정 수준임을 의미한다.

〈表 24〉 美國 生命保險會社의 主要資本에 대한 比重値

(單位 : %)

자 본	비 중 치
자본 및 잉여금	1
자산가치 준비금	1
자발적 투자 준비금	0.5
미지급 배당금	0.5

資料 :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危險加重對比 必要資本의 일정 수준, 즉 (i) 보험회사 자체의 수정수준 (ii) 규제에 의한 수정수준 (iii) 공인된 관리 수준 및 (iv) 강제적 관리 수준 등에 따라 필요시 적절한 措置가 시행되고 있다. 보험회사 자체의 수정 수준의 경우 보험회사는 州 規制當局에 資本修正 計劃을 제출하여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된다. 규제에 의한 수정 수준의 경우 보험업자는 州 規制當局에 자본수정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規制當局은 적절한 修正措置(Corrective Order)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공인된 관리수준의 경우 州 規制當局은 보험가입자와 채권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強制的 管理水準의 경우 州 規制當局은 보험회사에 재건·청산 등 규제당국의 관리하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損害保險會社

NAIC는 損害保險會社에 대해서도 위험가중 자본규제를 위한 모형을 개발하여 1993년 12월에 채택하였다. 위험은 資產危險(Asset Risk), 信用危險(Credit Risk) 및 引受危險(Underwriting Risk)으로 구분된다.

자산위험은 관련보험회사 자산위험(R0), 고정수입 자산위험(R1), 주식 자산위험(R2)으로 나뉜다. 신용위험은 신용관련 자산위험(R3)과 인수위험과 상관관계가 높은 신용위험(R4)으로 나뉜다. 인수위험은 신용위험과 상관관계가 높은 준비금관련 인수위험(R4)과 보험료관련 인수위험(R5)으로 나뉜다.

자산위험의 경우 관련이 없는 회사의 채권에 대해서는 0~30%의 비중, 관련이 없는 회사의 보통주에 대해서는 15%의 비중 등에 의하여 자산위험에 대한 필요자본이 산출된다(〈表 25〉 참조). 債券投資의 分散에 따른 위험을 고려하기 위하여 채권발행자 수의 첫 50에는 2.5의 비중, 다음 50에는 1.3의 비중, 다음 300에는 1.0의 비중, 400 이상에는 0.9의 비중을 두어 각 발행자의 수에 비중을 곱한 후 이를 총 발행자의 수로 나누어 分散度(size factor)를 구하고 이 분산도를 채권에 대한 필요자본에 다시 곱함으로써 분산 위험에 따른 추가적인 필요자본이 산출된다.

또한 투자자산 전체로 투자자산이 집중되어 있는 10大 發行者의 자산에 자산별로 30%를 한도로 약 두배의 필요자본이 산정되도록 책정된 비중치를 곱하여 追加的인 必要資本이 算出된다. 관련회사의 채권, 주식 등의 경우에는 관련회사의 위험자산대비 필요자본에 소유비율을 곱하여 관련회사의 자산에 대한 필요자본이 산정된다.

信用危險의 경우 재보험에 대한 비중치는 10%이며 기타 신용위험 관련자산에 대한 위험비중치는 1% 또는 5%이다. 帳簿外去來危險 關聯資產에 대한 위험비중치는 1%이다. 그리고 과거 3년간의 평균 보험료 수입의 성장률이 10% 이상일 경우 30%를 한도로 추

가적인 필요자본이 산정된다.

〈表 25〉 美國 損害保險會社의 主要資產에 대한 資產危險 比重値

(單位 : %)

자 산	자산위험비중치
비관련회사 채권	
국공채	0, 0.3
1등급 : AAA~A	0.3
2등급 : BBB	1
3등급 : BB	2
4등급 : B	4.5
5등급 : CCC	10
6등급 : 나머지	30
비관련회사 우선주식	
1등급	2.3
2등급	3
3등급	4
4등급	6.5
5등급	12
6등급	30
비관련회사 보통주식	15
부동산	10
기타 장기자산	20
현금, 단기투자자산	0.3
담보대출 등	5

資料 :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引受危險은 이에 대한 필요자본이 총 필요자본의 약 80%를 차지하는 가장 비중이 큰 항목이다. 준비금 및 보험료에 대한 인수위험대비 필요자본은 16개의 각 업무별 위험대비 비중치, 투자 수입, 개별 보험회사의 실적, 업무 집중도 등에 의하여 산정된다.

6가지 위험에 대한 필요자본으로부터 總 危險加重 必要資本(TRBC)은

$$TRBC = R0 + \sqrt{R1^2 + R2^2 + R3^2 + R4^2 + R5^2}$$

와 같이 산출된다.

監督當局은 실제자본을 위험가중 필요자본과 비교하여 위험가중 필요자본의 2분의 1을 '권한에 의한 관리수준(Authorized Control Level)'으로 정하고 권한에 의한 수준을 기준으로 4개로 나누어 보험회사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자본이 권한에 의한 관리수준의 200% 이하인 경우를 '회사에 의한 수행수준(Company Action Level)'이라 하고 州 監督當局은 자본계획을 45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보험회사에 요구하고 검토 후 이를 승인하게 된다.

보험회사의 자본이 권한에 의한 관리수준의 150% 이하인 경우를 '규제에 의한 수행수준(Regulatory Action Level)'이라 하고 州 監督當局은 修正 資本計劃을 45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보험회사에 요구하고 필요시 구체적인 是正措置(Corrective Order)를 취한다. 보험회사의 자본이 권한에 의한 관리수준의 100%에 미달하면 감독당국은 보험가입자 및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를 회생시키거나 또는 청산할 법적 권한을 갖는다. 보험회사의 자본이 권한에 의한 권리수준의 70% 이하인 경우를 '強制的 管理水準(Mandatory Control Level)'이라 하고 감독당국은 보험회사를 청산시키거나 청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3. 日本

가. 銀行

일본의 은행은 은행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도시은행과 지방은행의 구분없이 최저 10억엔의 資本金 規制를 받는다. 또한 은행법 제1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은행이 보유하는 자산 등에 비해 자기자본

의 충실 상황이 적당한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하 自己資本比率基準이라고 함)을 國際統一基準과 國內基準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그 기준이 1993년 4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해외영업 거점(해외지점 또는 은행법 제16조의 4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은행업을 영위하는 외국의 회사를 말함)을 갖고 있는 은행의 자기자본비율기준(이하 國際統一基準이라고 함)은 아래의 산식에 의해 얻어지는 比率이 8% 이상이어야 한다.

$$\text{자기자본비율} = \frac{\text{기본자본}+\text{보완자본}-\text{공제항목}}{\text{자산의 각 항목에 위험가중치를 곱한 금액의 합계액}+\text{장부외 거래의 각 신용위험상당액(帳簿外資産}\times\text{신용환산율)에 위험가중치를 곱한 금액의 합계}}$$

基本資本은 자본계정(非累積 配當型 永久優先株를 포함하며 보완자본은 제외함) 및 연결자회사 소액주주의 합계액에서 영업권 및 연결조정 계정 상당액을 공제한 것이다. 다만 자본계정에 관계되는 기간이익은 社外流出豫定額(배당 및 임원상여 예정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보완자본은 다음 항목들의 합계액이다.

① 유가증권의 時價와 帳簿價 차액의 45%에 상당하는 금액

② 貸損充當金(채권상각 특별계정은 제외함)

③ 未償還 無擔保 後順位負債로서 損失補塡에 충당되며 원리금 지급이 연기되는 부채성 자본조달수단

④ 期限附 後順位債務(원계약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것)

⑤ 期限附 優先株

단 ②의 대손충당금은 자기자본비율 산식 분모의 1.25%를 한도로 산입될 수 있으며 ④ 및 ⑤의 기한부 후순위부채 및 기한부 우선주(잔존기간이 5년 이내인 것은 연율 20%로 누적적으로 상각하는 우선주로 제한함)는 기본자본의 50% 한도로 산입될 수 있다. 보완자본은 기본자본 한도로 자기자본금에 산입될 수 있으며 자기

자본비율 제고를 위해 은행 상호간에 주식 등의 자본조달 수단을 의도적으로 서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상당액이 공제되도록 되어 있다.

자산(영업권, 연결조정계정, 채권상각특별계정 상당액 및 지급승낙대충계정은 제외함)의 항목별 위험가중치는 〈表 26〉과 같다. 그리고 帳簿外去來(지급승낙대충계정, 외환 및 금리관련 거래를 포함함)의 범위 및 신용환산율은 〈表 27〉에 설명되어 있다.

〈表 26〉 日本 銀行의 資產別 危險加重値

위험 가중치	자 산 항 목	비 고
0%	(1) 현금	· 외국통화 및 금을 포함한다.
	(2) OECD 국가의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의 채권	· OECD 국가란 OECD 가맹국 및 IMF의 일반차입결정권에 의하여 IMF와 특별한 결정을 체결하고 있는 나라를 말한다.
	(3) 상기 (2) 이외 국가의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의 현지통화표시 채권	· 현지통화에 의하여 조달된 것에 한한다.
	(4) 자행예금 또는 OECD 국가 중앙정부 채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당해 담보 상당액에 한한다.
	(5) OECD 국가 중앙정부에 의하여 보증된 채권	· 보험청구권을 담보로 하는 채권을 포함한다(보험금 상당에 한함).

〈表 26〉의 繼續

위험 가중치	자 산 항 목	비 고
10%	(1) 일본 지방공공단체 및 정부관계기관의 채권(그러나 지방공공단체 채권 중에서 특정사업 수입만으로 변제되는 채권은 제외함)	· 지방공공단체란 지방자치법 제1조의 2에 규정하는 지방공공단체를 말한다. · 정부관계기관이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주식회사 및 예금수취업무를 하는 법인 제외)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즉 ① 정부가 과반수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정부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의 예산·결산에 대해서 국회의 의결(승인을 포함)을 얻거나 주무 장관(총리대신을 포함)의 인가(승인을 포함)을 받는 법인
	(2) 일본 지방공공단체 또는 정부관계기관에 의하여 보증된 채권	· 보험부 채권(보험금 상당액으로 제한)
20%	(1) 국제개발은행의 채권 및 동 은행에 의해 보증 또는 담보된 채권	· 국제개발은행에는 국제부흥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유럽투자은행 및 北歐투자은행이 있다. · 담보금액 상당액에 한함
	(2) OECD 국가의 은행채권 및 이들 은행이 보증한 채권	

〈表 26〉의 繼續

위험 가중치	자 산 항 목	비 고
	(3) 잔존기간이 1년 이하인 OECD 국가 이외의 은행 채권 및 이들 은행이 보증한 잔존기간 1년 이하의 채권 (4) 일본을 제외한 OECD 국가의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 및 공공기관이 보증한 채권 (5) 미징수어음	· 공공부문이란 OECD 국가가 각각 자체적으로 정한 정의에 의한다.
50%	저당권부주택채권	· 주거목적(소유 또는 임대용)으로 저당권에 의하여 완전히 보전되고 있는 채권에 한한다. ·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제1순위 저당권에 한한다. · 투기적인 주택건설 또는 주택개발을 행하고 있는 者에 대한 대출에 관해서는 위와 상관없이 100%의 위험 가중치를 적용한다.
100%	상기 이외의 채권 및 기타의 자산	· 은행의 채권 가운데 타 은행이 발행한 자본조달수단에 관계되는 채권(자기자본에서 공제되고 있는 경우는 제외)은 위와 상관없이 100%의 위험 가중치를 적용한다.

資料 : 日本 大藏省.

〈表 27〉 日本 銀行의 帳簿外去來 信用換算率

신용환산율	거 래 종 류	비 고
0%	(1) 원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계약(아래의 (4), (7) 또는 (8)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이하 같다) 또는 임의의 시기에 무조건 취소 가능한 계약	· 계약이란 「스탠바이」(stand-by) 계약, 신용공여(credit line)계약 등을 말한다.
20%	(2) 단기의 유동성 높은 무역관련 우발채무	· 단기의 유동성 높은 무역관련 우발채무란 船荷에 의하여 담보된 상업 신용장의 발행을 말한다.
50%	(3) 특정 거래에 관계되는 우발채무((2)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 특정 거래에 관계되는 우발채무란 계약이행보증(당해 보증을 위한 스탠바이 신용장 포함), 입찰보증, 품질보증, 원본보존 신탁계약 등을 말한다.
	(4) NIF(Note Issuance Facilities) 또는 RUF(Revolving Underwriting Facilities)	· NIF 또는 RUF는 일정 기간 일정 범위 내에서 증권을 반복적으로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때 발행증권이 소화되지 않는 경우 은행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당해 증권의 매수 또는 금전대부 등을 약속하는 거래를 말한다.
	(5) 원계약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	· 임의로 무조건 취소 가능한 계약은 제외
	(6) 신용공여를 직접 대체하는 우발채무	· 신용공여를 직접 대체하는 우발채무란 일반적인 채무보증 및 어음인수(어음인수 성격을 갖는 裏書를 포함) 등을 말한다.

〈表 27〉의 繼續

신용환산율	거 래 종 류	비 고
	(7) 환매조건부 또는 구상권부 자산의 매각[1]	· 환매조건부 자산매각이란 금전채권, 증권 또는 고정자산 등의 매각시에 일정 기간 후 또는 일정 조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매각자산을 다시 매입한다는 특약이 첨부된 것을 말한다. · 구상권부 자산매각이란 금전채권, 증권 또는 고정자산 등의 매각시에 원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또는 자산가치의 하락이 발생하는 경우, 매각한 은행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한다는 특약이 첨부된 자산매각을 말한다.
100%	(8) 선물자산 구입, 선도(先渡)예금, 부분불입 주식의 구입 또는 부분불입 채권의 구입[1]	· 선물자산 구입이란 장래 일정 기일에 일정 조건에 따라서 금전채권 또는 증권 등을 구입하는 계약을 말한다(외환 또는 금리 관련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선도예금이란 장래 일정 기일에 일정 조건에 따라서 예금하는 계약이다. · 부분불입주식 또는 부분불입 채권의 구입이란 발행시에 발행가격 또는 액면금액의 일부를 불입하고, 발행 후의 일정 시기에 추가적인 불입이 이뤄지는 조건의 구입을 말한다.

註 : 1) 거래된 자산에 따라서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資料 : 日本 大藏省.

외환 및 금리 관련거래에 관계되는 帳簿外去來에 대해 적용하는 위험 가중치는 50%를 상한으로 하며, 신용위험 상당액은 〈表 28〉의 時價露出方式에 의하여 산출한다. 다만 상당 규모의 외환 및 금리 관련거래를 행하지 않는 은행은 아래 〈表 29〉의 原價露出方式으로 산출할 수 있다. 또한 時價露出方式에 의하여 산출하기 위한 사무체제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은행은 신용위험 상당액을 原價露出方式에 의하여 산출할 수 있다.

市價露出方式에 의한 신용위험 상당액은 ① 신용위험 상당액 산출시점에서 시장조건에 따라 평가한 재구축 비용 중 正(+)의 값을 갖는 재구축 비용액과 ② 당해 거래의 원본금액에 대해 〈表 28〉의 구분에 따른 신용환산율을 곱해 얻은 금액의 합계이다. 다만 동일 통화간 변동금리 스왑은 ②의 금액을 합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表 28〉 日本의 時價露出方式 基準

(單位 : %)

거 래 종 류	잔 존 기 간	신용환산율
외환 관련거래	1년 이내	1.0
	1년 초과	5.0
금리 관련거래	1년 이내	0.0
	1년 초과	0.5

資料 : 日本 大藏省.

〈表 29〉 日本의 原價露出方式 基準

(單位 : %)

거 래 종 류	원계약기간	신용환산율
외환 관련거래	1년 이내	2.0
	1년 초과	3.0
금리 관련거래	1년 이내	0.5
	1년 초과	1.0

資料 : 日本 大藏省.

外換關聯去來란 異種 通貨간의 금리스왑거래, 선물외환거래, 통화선물거래 및 통화옵션(옵션 권리의 취득에 한한다)거래 등을 말한다. 그리고 金利關聯去來란 동일 통화간의 금리스왑거래, 금리선물예약(FRA)거래, 금리선물거래 및 금리옵션(옵션 권리의 취득에 한한다)거래 등을 말한다. 외환 및 금리 관련거래 중 일일 정산을 위해 증거금를 보유하여야 하는 거래소 거래 및 原契約期間이 14일 이내의 외환관련 거래는 신용위험 상당액 산출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後順位債 또는 永久後順位債 發行을 통해 자금을 차입하는 금융기관은 국제통일기준의 자기자본비율이 요구된다.

그리고 해외영업 거점을 갖지 않는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기준(이하 국내기준이라 한다)은 아래의 산식에 의해 얻어지는 비율이 4%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계속 적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내기준 대신에 國際統一基準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text{自己資本比率} = \frac{\text{자기자본금[자본금계정(사외유출 예정액 제외)+제충당금계정(대손충당금〈채권상각특별계정 제외〉+퇴직급여충당금+기타 충당금+특별법상의 충당금)+稅效果 상당액으로서 大藏相이 별도로 정하는 것]}}{\text{총자산-지급승낙대충계정 중 大藏相이 별도로 정하는 것-채권상각 특별계정 상당액}}$$

국내기준은 期末殘高(中間期末殘高 포함)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다만 총자산은 期間中 平均殘高(中間期間中 平均殘高 포함)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稅效果 상당액으로서 大藏相이 별도로 정하는 것이란 결산에서 기준이 되는 회계상 처리와 세법상 처리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기간총액 차이에 대해 실효세율을 곱해 얻은 금액을 말한다. 그리고 支給承諾貸充計定 중 大藏相이 별도로 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어음할인시장 및 은행인수어음시장 거래에 관련된 어음 인수

(2) 신용장(차입보증 또는 채권발행보증에 상당하는 것은 제외)

(3) 다음의 차입보증

① 공적금융기관의 대리업무에 부수하여 행하는 차입보증

② 주택금융회사에 대한 차입보증

③ 일본 은행법 제16조의 2 제1항에 따른 증권회사 등에 대한 차입보증

④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재보증을 받은 차입보증

(4) 다음의 채권발행보증

① 주택금융회사에 대한 채권발행보증

② 일본 은행법 제16조의 2 제1항에 따른 증권회사 등에 대한 채권발행보증

③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재보증을 받은 채권발행보증

나. 證券會社

일본의 증권회사에 대한 자기자본규제는 증권거래법 제54조 제2항 제1호와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大藏省의 통달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증권회사 중 原引受를 할 수 있는 간사회사는 30억엔의 최저자본금 규제를 받고 있으며, 간사회사 이외의 原引受를 할 수 있는 기타 회사는 10억엔, 原引受는 할 수 없으나 증권거래소 회원인 회원회사는 2억엔, 비회원회사는 1억엔의 최저자본금 규제를 받는다. 자본금이 미달할 경우 면허의 거부요건에 해당되며 면허 후에도 最低資本金額을 미달하는 경우 면허취소 또는 업무가 정지될 수 있다.

증권회사의 자기자본규제를 위한 規制 原則은 ① 위험의 측정방법으로 각 자금포지션에 대하여 危險加重値 附與方式을 채택하며 ② 인수계약과 보증 등의 帳簿外去來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며 ③ 위험헤지거래에 대하여는 現物資産과의 差減(netting)을 인정하여

위험자산 계산시에 이를 경감시킨다.

또한 증권회사에 대한 종합적인 재무안정 상태에 관한 監督基準을 정하고 그에 따라 자기자본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종합적인 재무안정상태에 관한 산식은 다음과 같다.

(자기자본－고정성자산) > (시장위험 상당액＋거래상대방위험 상당액＋기초적위험 상당액)

自己資本은 資本金, 法定 準備金, 剩餘金 또는 缺損金 및 其他 資本金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것 등의 기본자본과 보완자본 성격으로서 다음 ①부터 ⑧까지 합계액이 기본자본 합계액에 달할 때까지의 자기자본이 있다.

① 去來損失準備金
② 證券去來責任準備金
③ 金融先物去來責任準備金
④ 貸損充當金
⑤ 後順位特約附借入金(증권회사가 당해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지급에 있어서 자기자본기준에 미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당사자가 약속한 차입금으로 大藏相이 승인한 것을 말한다)
⑥ 投資有價證券(담보제공되지 않은 것에 한한다)의 평가익 합계액으로부터 평가손 합계액의 50%를 차감한 評價益 또는 評價損(평가익의 경우는 당해 평가익의 90% 금액에 한한다)
⑦ 投資有價證券(담보제공된 것에 한한다)의 評價益(당해 평가익의 90% 금액에 한한다)
⑧ 투자유가증권 이외의 有價證券 評價損益(평가익의 경우는 당해 평가익의 90% 금액에 한한다)

공제되는 고정성 자산은 固定資產(고정자산 중 담보제공되지 않은 자산은 그 장부가액 합계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預置金(증권거래책임준비금 및 금융선물거래책임준비금에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短期 貸出金(관계회사에 대한 것에 한한다), 先給金(옵션취득에 관계된 것은 제외한다), 先給費用, 自己株式 등이 있다. 고정자산 중 증권회사가 자기채무의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유동성이 인정되는 것은 당해 고정자산으로부터 그 금액을 공제한다.

〈表 30〉 日本 證券會社의 엔貨 表示 債權去來의 市場 危險加重値

(單位 : %)

거래 자산 및 잔존 기간 구분		국채 및 국채관련 유가증권 선물거래	일반 채권	기타 채권
I	0개월 초과~3개월 이하	0.20	0.30	0.60
	3개월 초과~6개월 이하	0.40	0.65	1.30
	6개월 초과~1년 이하	0.75	1.20	2.40
	1년 초과 ~3년 이하	1.40	2.25	4.50
	3년 초과 ~5년 이하	2.00	3.20	6.40
	5년 초과 ~7년 이하	2.50	4.00	8.00
	7년 초과 ~10년 이하	3.20	5.10	10.20
	10년 초과 ~15년 이하	4.20	6.70	13.40
	15년 초과	5.00	8.00	16.00
II	0년 초과 ~1년 이하	0.75	1.20	2.40
	1년 초과 ~5년 이하	2.00	3.20	6.40
	5년 초과 ~10년 이하	3.20	5.10	10.20
	10년 초과	5.00	8.00	16.00

註 : 1. I과 같이 잔존기간을 구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II와 같이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인수기간중(인수계약체결일부터 납입기일까지를 말한다)인 유가증권의 위험 상당액은 인수액으로부터 판매위탁액 및 고객신청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인수에 관계된 유가증권 비율의 50%를 곱해서 산출된 금액이다.

資料 : 日本 大藏省.

유가증권의 가격변동과 기타 이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는 보유 유가증권 가격변동 등에 의한 시장위험 상당액, 거래상대

방의 계약 불이행 등에 의한 거래상대방위험 상당액, 사무처리의 착오 등에 의한 기초적위험 상당액 등이 있다. 市場危險 相當額은 다음 ①부터 ③까지의 합계 금액으로 한다.

① 증권회사가 보유하는 有價證券 등(투자유가증권은 담보에 제공되지 않은 상장 투자유가증권으로 제한한다)의 時價額(상장 투자유가증권은 시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危險加重値(〈表 30〉부터 〈表 32〉 참조)를 곱해 얻어진 금액

② 옵션거래에 관계된 시장위험 상당액

③ 외국통화 표시 자산(대차대조표에 기재되지 않는 채권을 포함한다) 금액(유가증권은 시가액)과 외국통화 표시 부채(대차대조표에 기재되지 않는 채무를 포함한다) 금액의 차액에 대해 6%를 곱한 금액

동일 발행자가 발행하는 유가증권 등의 보유에 따라 시장위험 상당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 것으로 한다. 증권회사가 보유하는 유가증권 등(투자유가증권을 제외한다) 가운데 「옵션」 거래 등에 따라 동시에 존재하게 되어 當該 有價證券 價格變動 등의 위험이 감소하고 당해 감소하는 위험금액이 객관적으로 규명된 경우에는 시장위험 상당액으로부터 그 금액을 차감한다.

거래상대방 위험 상당액은 해당 자산의 대상액에 대해 거래 및 기간 구분에 따라 危險加重値(〈表 33〉 참조)를 곱해 산출한 금액(이하 「여신상당액」이라고 함)과 〈表 34〉 자산의 대상액에 대해 거래 및 거래상대방 구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곱해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이다. 다만 법적으로 유효한 異種通貨間 金利스왑 등의 거래, 선물외국환 거래, 금리스왑 거래, 또는 금리선도 거래는 〈表 35〉의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여신상당액으로 할 수 있다. 거래상대방 위험 상당액 계산시(신용거래에 관계되는 것은 제외한다) 거래상대방의 담보금 또는 기타 자산을 예탁받은 경우에는 當該 預託資産額을 與信相當額으로부터 控除할 수 있다.

〈表 31〉 日本 證券會社의 OECD 國家 通貨表示 債券去來의 市場危險加重値

(單位 : %)

거래자산 및 잔존기간 구분		국채 및 국채관련 유가증권 선물거래	일반 채권	기타 채권
I	0개월 초과~3개월 이하	0.20	0.30	0.60
	3개월 초과~6개월 이하	0.60	0.90	1.80
	6개월 초과~ 1년 이하	1.00	1.60	3.20
	1년 초과 ~ 3년 이하	2.00	3.20	6.40
	3년 초과 ~ 5년 이하	3.00	4.80	9.60
	5년 초과 ~ 7년 이하	3.70	5.90	11.80
	7년 초과 ~10년 이하	4.80	7.60	15.20
	10년 초과 ~15년 이하	6.00	9.60	19.20
	15년 초과 ~20년 이하	6.70	10.70	21.40
	20년 초과 ~25년 이하	7.20	11.50	23.00
	25년 초과	7.60	12.10	24.20
II	0년 초과 ~ 1년 이하	1.00	1.60	3.20
	1년 초과 ~ 5년 이하	3.00	4.80	9.60
	5년 초과 ~10년 이하	4.80	7.60	15.20
	10년 초과 ~25년 이하	7.20	11.50	23.00
	25년 초과	7.60	12.10	24.20

註 : 1. I과 같이 잔존기간을 구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II와 같이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인수기간중(인수계약체결일부터 납입기일까지를 말한다)인 유가증권의 위험상당액은 인수액으로부터 판매위탁액 및 고객신청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인수에 관계된 유가증권 비율의 50%를 곱해서 산출된 금액이다.
3. 외화표시 위험 상당액은 계산일의 외환시세를 적용하여 엔화로 환산한다.

資料 : 日本 大藏省.

이 규정과 관계없이 개개의 거래 또는 자산에 관계되는 거래상대방 위험 상당액을 다른 방법에 의해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경

〈表 32〉 日本 證券會社의 去來資產 및 特性에 따른 市場 危險加重値

거래자산 및 특성에 따른 구분			비 율
· 주식 · 출자증권 · 우선출자증권 · 주가지수선물거래 등[1]	국내법인 발행	東京, 大阪, 名古屋증권거래소 1부 상장 유가증권	10%
		東京, 大阪, 名古屋증권거래소 2부 상장 유가증권	15%
		기타 일본 증권거래소 상장 유가증권	15%
		店頭賣買有價證券	25%
		기타	100%
	외국법인 발행	외국증권거래소 상장 유가증권[2]	20%
		기타	100%
· 수익증권 · 해외카드론채권신탁수익권증서	국내시장 발행	공사채투자신탁	5.1%
		주식투자신탁	10.0%
	외국시장 발행	OECD국가 시장에서 발행된 것	20%
		기타 시장에서 발행된 것	100%
· CD · CP · 엔화표시은행인수어음 · 금융선물거래	국내시장 발행 및 국내선물시장 거래	잔존기간이 동일한 엔화표시 국채와 관계된 비율 적용	
	외국시장 발행 및 외국선물시장 거래	잔존기간이 동일한 외화표시 국채와 관계된 비율 적용	
· 전환사채	증권거래소상장 유가증권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인 경우	동일 발행자가 발행한 주식에 관계된 비율 적용
		시가가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	동일 발행자가 발행한 잔존기간이 동일한 일반채권, 기타 채권 또는 주식에 관계된 비율 중 낮은 비율 적용
	점두매매유가증권 및 기타	동일 발행자가 발행한 주식에 관계된 비율 적용	

〈表 32〉의 繼續

거래자산 및 특성에 따른 구분			
· 신주인수권부사채	분리형	분리전 신주인수권부사채	동일 발행자가 발행한 전환사채에 관계된 비율 적용
		분리후 사채	동일 발행자가 발행한 잔존기간이 동일한 일반채권 또는 기타채권 등에 관계된 비율 적용
		분리후신주인수권증권	동일 발행자가 발행한 주식에 관계된 비율에 4를 곱한 비율 적용
	비분리형	동일 발행자가 발행한 전환사채에 관계된 비율 적용	
· 신주인수권증서 · 우선출자인수권증서	동일 발행자가 발행한 주식 또는 우선 출자증권에 관계된 비율에 4를 곱한 비율 적용		
· 유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채권 및 기타 유가증권	100.0%		

註 : 1. 인수기간중(인수계약체결일부터 납입기일 까지를 말한다)인 유가증권의 위험상당액은 인수액으로부터 판매위탁액 및 고객신청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당해 인수에 관계된 유가증권 비율의 50%를 곱해서 산출된 금액이다.

2. 외화표시 리스크 상당액은 계산일의 외환시세를 적용하여 엔화로 환산한다.

1) 주가지수선물거래 등의 경우는 해당 주식에 관계된 비율을 적용한다.

2) 東京證券去來所 外國部를 포함한다.

資料 : 日本 大藏省.

우에는 당해 방법에 의해 얻어지는 금액이 거래상대방 위험 상당액으로 인정될 수 있다.

〈表 33〉 日本 證券會社의 殘存期間에 따른 去來相對方 危險加重値

(單位 : %)

거래자산 구분	잔존기간	대 상 액	비 율
· RP 거래	1년 이하	유가증권 등의 시가	1.2
· 채권선도 거래[1]	1년 초과		5.1
· 이종통화간금리스왑	0년 초과~1년 이하	거래원금	2.0
거래 등	1년 초과~2년 이하		5.0
· 외국환 선물거래	2년 초과~3년 이하		8.0
	3년 초과~4년 이하		11.0
	4년 초과~5년 이하		14.0
	1년 추가마다		+3.0
· 금리스왑거래	0년 초과~1년 이하		0.5
· 금리선도거래	1년 초과~2년 이하		1.0
	2년 초과~3년 이하		2.0
	3년 초과~4년 이하		3.0
	4년 초과~5년 이하		4.0
	1년 추가마다		+1.0
· 금의 매매		금저축구좌잔고	4.0
· 보증채무		보증액	100
· 미수금		장부가액	100
· 미수수익		장부가액	100
· 대출채권		채권시가 또는 액면	100
· 고객에 대한 체당금		장부가액	100
· 신용거래계정		장부가액	100

註 : 1) 채권매매계약후 1개월에서 최고 6개월 내에 受渡하는 거래를 말한다.

資料 : 日本 大藏省.

그리고 사무처리의 착오 등에 의해 발생하는 기초적 위험 상당액은 계산하는 月의 직전 월부터 과거 1년간의 每月 營業費用 合計額에 대해 25%를 곱해 산출된다.

〈表 34〉 日本 證券會社의 去來相對에 따른 去來相對方 危險加重値

(單位 : %)

거 래 자 산 구 분	거 래 상 대 방	비 율
· RP 거래 · 채권선도거래[1] · 이종통화간금리스왑거래 등 · 선물외국환 거래	· 국가, 정부, 지방공공단체, 중앙은행(외국의 경우 포함)	0
· 금리스왑거래 · 금리선도거래	· 금융기관	2
· 금의 매매 · 보증채무	· 기타 은행 및 개인	10
· 미수금		10
· 미수수익		10
· 대출채권		10
· 고객에 대한 체당금(1월 미만)		10
· 고객에 대한 체당금(1월 이상)		100
· 신용거래계정		2

註 : 1) 채권매매계약후 1개월에서 최고 6개월 내에 受渡하는 거래를 말한다.

1. 금융기관은 증권회사, 외국 증권회사, 은행, 신탁은행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조에서 정하는 금융기관, 증권회사 및 외국 증권회사의 관계회사로서 외국에서 증권업 또는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거래상대방의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10%를 적용할 수 있다.
3. 거래상대방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 미수금, 미수수익, 대출채권 또는 고객에 대한 체당금(1월 미만인 것) 등의 거래상대방 위험 상당액은 RP 거래 등의 거래상대방 구분에 따를 수 있다.
4. 계약 기간이 14일 이내인 RP 거래, 이종통화간 금리스왑거래, 외국환선물거래 또는 금의 매매는 거래상대방 위험 상당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資料 : 日本 大藏省.

증권회사에 대한 早期警報制度로서 일정한 기준미달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적인 재무안정상태에 관한 감독기준 산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제를 실시한다. 고정화되어 있지 않은 自己資本, 즉 산식의 좌변 합계액이 우변의 위험상당액 합계액의 150% 이하인 경우에 大藏省은 그 상황, 원인, 개선의 가능성 및 비율추이 등에 관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고정화되어 있지 않은 自己資本이 危險相當額 合計額의 120% 이하가 된 경우 증권회사는 재무개선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감독당국에 즉시 제출하고 계획에 따른 개선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하며 比率報告書를 1日 報告週期로 전환한다. 그리고 3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조치 및 재산의 공탁 등 기타 필요한 조치가 취해진다.

〈表 35〉 日本 證券會社의 原契約期間에 따른 去來相對方 危險加重値

(單位 : %)

거래자산 구분	원계약기간	대상액	비 율
· 이종통화간금리 스왑거래 등 · 선물외국환 거래	0년 초과~1년 이하	거래원본금액	1.50
	1년 초과~2년 이하		3.75
	2년 초과~3년 이하		6.00
	3년 초과~4년 이하		8.25
	4년 초과~5년 이하		10.50
	1년 추가마다		+2.25
· 금리스왑거래 · 금리선도거래	0년 초과~1년 이하	거래원본금액	0.35
	1년 초과~2년 이하		0.75
	2년 초과~3년 이하		1.50
	3년 초과~4년 이하		2.25
	4년 초과~5년 이하		3.00
	1년 추가마다		+0.75

資料 : 日本 大藏省.

한편 증권회사는 자기자본규제와 함께 投資者保護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財務健全性을 維持하여야 한다. 첫째, 순자산액이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補塡해야 하며 부채는 순자산액의 10배 이내로 규제된다.

순자산액=B/S상의 자기자본+매매손실준비금+증권거래책임준비금
−사외유출액+유가증권평가익

둘째, 投資者保護를 위하여 주식보유는 상품유가증권의 경우 순자산액의 40%, 투자유가증권의 경우 순자산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先物去來에 대한 規制에 의하면 해외금융선물의 경우는 순자산액 범위내, 주식선물(해외주가지수선물 및 주가지수선물옵션을 포함한다)의 경우는 순자산액의 40% 범위내, 투자유가증권의 위험회피 목적인 경우는 直前 營業年度末 또는 當該 營業年度의 各月末 證券의 時價總額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제한되고 있다.

다. 保險會社

일본의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6조에 따라 資本金의 最低限度가 규제되고 있다. 즉 주식회사, 상호회사의 구별과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의 구별 없이 10억엔의 최저자본금 규제를 받는다.

大藏相은 적절한 경영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경영의 건전성을 훼손하여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보험회사에 대해 조치를 강구해야 할 사항 및 기한을 명시하여 經營의 健全性을 確保하기 위한 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보험회사의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급여력(solvency margin)에 대한 규제가 新保險業法 제130조에 규정되어 1996년 4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支給餘力比率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支給餘力比率 = 지급여력 총액/통상의 예측을 초과하는 위험 총액

보험회사의 통상의 예측을 초과하는 危險 總額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생명보험회사의 통상의 예측을 초과하는 위험총액=

$$\frac{\sqrt{R_1^2+(R_2+R_3)^2}+R_4}{2}$$

손해보험회사의 통상의 예측을 초과하는 위험총액=

$$\frac{\sqrt{R_5^2+(R_2+R_3)^2}+R_4}{2}+R_6$$

단 R_1=보험위험 상당액, R_2=예정이율위험 상당액, R_3=자산운용위험 상당액, R_4=경영관리위험상당액, R_5=일반보험위험상당액, R_6=거대재해위험상당액

지급여력 총액은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자금으로 內部留保와 株式·土地의 未實現利益 등이 있다. 그 基準에는 A방식과 B방식 두 가지 기준이 있으며 B방식 기준이 A방식 기준보다 엄격하다(〈表 36〉 참조).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위험 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生命保險會社의 保險危險 相當額은 위험대상 금액에 각각의 위험계수를 곱해 산출한 금액을 아래의 산식에 의해 산출한 금액이다(〈表 37〉 참조).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위험 산식

$$=\sqrt{(A+B)^2+C^2}+D+E+F$$

〈表 36〉 日本 保險會社의 支給餘力 總額 基準

A 기 준	B 기 준
① 자본의 部 합계－[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지출금액(상호보험회사는 잉여금의 익사업연도 사원배당금 포함)]	① 좌동
② 가격변동준비금	② 좌동
③ 책임준비금 중 위험준비금	③ 좌동
④ 배당준비금 중 미할당액	④ 좌동
⑤ 대손충당금(채권상각특별계정 및 특정해외채권충당계정은 제외)	⑤ 좌동
⑥ 상장주식의 미실현이익×90%	⑥ 상장주식의 미실현이익×45%
⑦ 토지의 미실현이익×85%	⑦ 토지의 미실현이익×35%
⑧ 가격변동준비금과 관련된 稅效果相當額	⑧, ⑨는 포함치 않음
⑨ 배당준비금 전입액의 최근 5개년간 평균치	

資料 : 日本 大藏省.

〈表 37〉 日本 生命保險會社의 保險危險 計數

위 험 종 류	위 험 대 상 금 액[1]	위 험 계 수
A. 보통사망위험	위험보험금액	0.6/1000
B. 재해사망위험	재해사망보험금액	0.06/1000
C. 생존보장위험	개인연금보험 기말책임준비금액	10/1000
D. 재해입원위험	재해입원일액총액×예정평균급부일수	3/1000
E. 질병입원위험	질병입원일액총액×예정평균급부일수	7.5/1000
F. 기타 위험	위험준비금적립한도액	1

註 : 1) 위험대상 금액은 出再額을 공제하고, 受再額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資料 : 日本 大藏省.

損害保險會社(외국 손해보험회사 등 및 인수 사원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保險危險 相當額은 ① 일반보험위험 상당액으로서 보험위험 대상금액에 각각의 위험비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아래 산식에 의해 산출한 보험료기준 위험 상당액과 보험금기준 위험 상당액 중 큰 금액과, ② 거대재해위험 상당액으로서 지진재해위험 상당액 합계액과 풍수재해위험 상당액 합계액 중 큰 금액의 합계액이다(〈表 38〉 및 〈表 39〉 참조).

손해보험회사의 일반보험위험 산식

$$= \sqrt{(1-\rho)\times(a^2+b^2+c^2+d^2+e^2+f^2)+\rho\times(a+b+c+d+e+f)^2}$$

단, ρ는 상관계수로서 0.05로 한다.

〈表 38〉 日本 損害保險會社의 一般保險危險 計數

(單位 : %)

	보험료기준		보험금기준	
	위험대상금액	위험비율	위험대상금액	위험비율
a 화재보험 (가계지진보험[1] 제외)	主要旣經過保險料	12	主要發生保險金[2]	33
b. 상해보험		9		26
c. 자동차보험		8		14
d. 선박보험		56		62
e. 적하보험		21		39
f. 기타보험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제외)		17		34

註 : 1) 가계지진보험은 지진보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지진보험계약을 말한다(이하 동일).
2) 주요발생보험금은 거대재해에 관계되는 금액을 제외한 직전 3개 사업연도(외국보험회사 등 및 인수사원에 관해서는 일본에서의 3개 사업연도)의 평균치를 말한다.

資料 : 日本 大藏省.

〈表 39〉 日本 損害保險會社의 巨大災害危險

	지진재해 위험상당액	추정주요지급보험금의 산출방법	풍수재해 위험상당액	추정주요지급보험금의 산출방법
화재보험 (가계지진보험 제외)	관동대지진이 재발한 경우 추정 주요지급보험금	지진재해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이 첨부된 물건 중 피해가 상정되는 지역에 존재하는 물건의 주요보험금액, 피해율 등에 의거하여 산출한다.	1991년의 태풍 제19호가 재발한 경우 추정주요지급보험금	풍수재해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이 첨부된 물건 중 피해가 상정되는 지역에 존재하는 물건의 주요보험금액, 피해율 등에 의거하여 산출된다.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선박보험				
적하보험				
기타보험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제외)				
가계지진보험	책임한도액	—	—	—

資料 : 日本 大藏省.

豫定利率危險은 책임준비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예정이율을 확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損失危險을 말한다. 예정이율위험 상당액은 책임준비금의 예정이율에 위험계수를 곱해 얻은 수치를 해당 예정이율의 責任準備金 期末(외국 보험회사 및 인수 사원은 일본에서의 사업연도 결산기)殘高를 곱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表 40〉 참조).

資產運用危險은 자산의 운용 등에 관한 위험으로서 보유하는 유가증권 및 기타 자산이 통상의 예측을 초과하는 가격변동 등에 노출될 때 발생하는 價格變動 등의 危險, 보유하는 유가증권 및 기타 자산에 대해서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및 기타 이유에 의해서 발생하는 信用危險, 관련회사에 대한 투자 및 기타 이유에 의해서 발생하는 關聯會社危險, 유가증권선물거래, 금융선물거래, 금리스왑 또는 통화스왑거래 등에 의해 발생하는 帳簿外去來危險 및 再保險危險과 再保險回收危險의 각 상당액 합계로 구성된다.

가격변동 등의 위험 상당액은 危險對象 資產의 期末 帳簿價(외국보험회사 및 인수 사원은 일본에서의 사업연도 결산기 帳簿價이며 이하

같다)에 위험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으로부터 분산투자효과 합계액(분산투자에 의한 위험 감소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일정비율(생명보험회사 30%, 손해보험회사 20%)을 공제한 금액이다(〈表 41〉 참조).

〈表 40〉 日本 保險會社의 豫定利率 危險加重値

	예 정 이 율 구 분	위 험 계 수
생명보험회사 책임준비금	0.0% 초과 3.0% 이하	0.001
	3.0% 초과 4.0% 이하	0.1
	4.0% 초과 5.0% 이하	0.4
	5.0% 초과 6.0% 이하	0.8
	6.0% 초과	1.0
손해보험회사 책임준비금	0.0% 초과 1.0% 이하	0.01
	1.0% 초과 3.0% 이하	0.1
	3.0% 초과 4.0% 이하	0.2
	4.0% 초과 5.0% 이하	0.35
	5.0% 초과 6.0% 이하	0.5
	6.0% 초과	0.7

資料 : 日本 大藏省.

〈表 41〉 日本 保險會社의 價格變動 등의 危險加重値

(單位 : %)

위 험 대 상 자 산[1]	위 험 비 율
국 내 주 식	10
외 국 주 식	15
외화표시채권, 외화표시대부금[2]	5
부 동 산(국 내 토 지)	2
금	20
상 품 유 가 증 권	1

註 : 1) 국내관련회사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출자 및 대출금은 제외한다.
2) 외화표시차입금잔고와 결제시의 엔화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외화표시채권 및 외화표시대출금을 공제한다.

資料 : 日本 大藏省.

신용위험 상당액은 위험대상 자산의 期末 帳簿價에 위험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이다(〈表 42〉참조). 〈表 42〉의 등급은 〈表 43〉의 구분에 따른다.

〈表 42〉 日本 保險會社의 信用危險加重値

(單位 : %)

위 험 대 상 자 산[1]		위 험 비 율
대출금(지급승낙대충계정, 미수수익 및 미수이자 포함)	1 등 급	0
	2 등 급	1
채권(미수수익 및 미수이자 포함)	3 등 급	4
預貯金(미수수익 및 미수이자 포함)	4 등 급	30
단 자 거 래		0.1(30[2])

註 : 1) 국내 관련회사,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제외한다.
2) 거래상대방이 4등급일 경우의 위험 비율이다.
資料 : 日本 大藏省.

〈表 43〉 日本 保險會社의 信用等級 區分

	여신거래처 및 발행기관 등
1 등 급	① 최상신용등급을 갖는 국가의 중앙정부, 중앙은행 및 국제기관 ② OECD 국가의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 ③ 일본의 정부관계기관, 지방공공단체 및 공기업 ④ ①~③의 者가 보증하는 者 ⑤ 보험약관대출
2 등 급	① 1등급 이외 국가의 중앙정부, 중앙은행 및 국제기관 ② 외국의 정부관계기관, 지방공공단체 및 공기업 ③ 일본 및 외국의 금융기관 ④ BBB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갖는 者 ⑤ ①~④의 者가 보증하는 者 ⑥ 주택저당대출 ⑦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는 여신 ⑧ 신용보증협회가 보증하는 여신

〈表 43〉의 繼續

	여신거래처 및 발행기관 등
3 등 급	1등급과 2등급에 해당되지 않으며, 4등급에 예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여신거래처에 대한 여신
4 등 급	경영파탄한 거래처의 채권 연체채권 금리감면 등 채권

資料 : 日本 大藏省.

關聯會社危險 相當額은 위험대상 자산의 期末 帳簿價에 위험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이다(〈表 44〉참조).

〈表 44〉 日本 保險會社의 關聯會社 危險加重値

(單位 : %)

	사 업 형 태	위험대상자산	위험비율
국내관련회사	금융관련회사[1]	주식	15
		대부금[5]	1.5
	비금융관련회사[2]	주식	10
		대부금[5]	1.0
해외현지법인	금융관련회사[3]	주식	20
		대부금[5]	6.5
	비금융관련회사[4]	주식	15
		대부금[5]	6.0
상기와 관계없이 〈表 43〉의 4등급에 해당하는 국내관련 회사 및 해외현지법인		주식	100
		대부금[5]	30

註 : 1) 리스업무, 저당증권업무, 신용보증업무, 기타 업무를 행하는 회사, 손해보험자회사 및 생명보험자회사를 말한다.
2) 일반대행업무, 보험대행업무, 기타 부수업무 및 부수업무에 준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를 말한다.
3) 유가증권투자, 부동산투자, 보험인수업무 및 기타업무를 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4) 투자고문, 보험중개 및 기타업무를 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5) 지급승낙대충을 포함한다.

資料 : 日本 大藏省.

帳簿外去來危險 相當額은 다음과 같은 선물거래위험 상당액, 옵션거래위험 상당액 및 스왑거래위험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이다.

① 선물거래위험 상당액으로서 거래대상 잔고에 위험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表 45〉 참조)

〈表 45〉 日本 保險會社의 先物去來 危險加重値

(單位 : %)

거 래 종 류	거래대상잔고	위 험 비 율
외국통화관련 선물거래(외환예약 포함)	매도기준잔고	-5
	매입기준잔고	5
주식관련 선물거래	매도기준잔고	-10
	매입기준잔고	10

資料 : 日本 大藏省.

② 옵션거래위험 상당액으로서 거래종류별 거래대상잔고에 위험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表 46〉 참조)

③ 스왑거래 등의 위험 상당액으로서 原價露出方式 또는 時價露出方式으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신용등급 2등급의 위험비율을 곱한 금액(〈表 47〉 참조)

가격변동 등의 危險 相當額, 信用危險 相當額, 關聯會社危險 相當額 및 帳簿外去來 危險 相當額 등에 準하는 것으로 大藏相이 인정하는 再保險危險과 再保險回收危險 相當額은 다음 금액의 합계액이다.

① 재보험위험 상당액으로서 적립하지 않은 책임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에 위험비율(1%)을 곱한 금액

② 재보험위험 상당액으로서 再保險貸(外國再保險貸를 포함)에 위험비율(1%)을 곱한 금액

經營管理危險은 업무운영상 통상의 예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서 동 위험 상당액은 보험위험 상당액, 예정이율위험 상당액,

〈表 46〉 日本 保險會社의 옵션去來 危險加重値

(單位 : %)

거 래 종 류		거래대상잔고	위험비율
외국통화관련 옵션 거래	콜매입	프리미엄 상당액	100
	풋매입	행사가격×거래단위×계약수량	-5
		프리미엄 상당액	100
	콜매도	프리미엄 상당액	-100
	풋매도	행사가격×거래단위×계약수량	5
		프리미엄 상당액	-100
	콜매입	프리미엄 상당액	100
	풋매입	행사가격×거래단위×계약수량	-10
		프리미엄 상당액	100
	콜매도	프리미엄 상당액	-100
	풋매도	행사가격×거래단위×계약수량	10
		프리미엄 상당액	-100

資料 : 日本 大藏省.

가격변동 등의 위험 상당액, 신용위험 상당액, 관련회사위험 상당액 및 장부외거래위험 상당액의 합계액에 赤字決算 保險會社(위험비율 3%)와 黑字決算 保險會社(위험비율 2%)로 구분하여 곱한 금액이다.

大藏相은 支給餘力(solvency margin) 比率 및 해당 보험회사의 재산 상황, 검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적절한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경영의 건전성을 훼손하여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기한을 명시하여 經營改善 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한다. 현재 지급여력비율은 감독당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되고 있으나, 최근 大藏省은 1998년도부터 지급여

력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인 早期是正措置制度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表 47〉 日本 保險會社의 스왑去來 등의 危險加重値

(單位 : %)

	거 래 종 류	기 간 구 분[1]	위험비율
원가노출방식	이종통화간 금리스왑등	0년 초과~1년 이하	2
		1년 초과~2년 이하	5
		2년 초과~3년 이하	8
		3년 초과~4년 이하	11
		4년 초과~5년 이하	14
		추가 1년마다	+3
	동일통화간 금리스왑	0년 초과~1년 이하	0.5
		1년 초과~2년 이하	1
		2년 초과~3년 이하	2
		3년 초과~4년 이하	3
		4년 초과~5년 이하	4
		추가 1년마다	+1
시가노출방식[2]	이종통화간 금리스왑 등	1년 이내	1
		1년 초과	5
	동일통화간 금리「스왑」	1년 이내	0.0
		1년 초과	0.5

註 : 1) 원가노출방식은 원계약기간에 따라 기간구분하며, 시가노출방식은 잔존기간에 따라 구분한다.

2) 장부외거래 위험 상당액 산출시점에서 시장실세조건에 의해 평가한 재구축비용을 합계한다.

資料 : 日本 大藏省.

〈參 考 文 獻〉

안효원 · 김희경, 『BIS자기자본비율규제의 영향 및 시사점』, 연구조사 96－11, 쌍용경제연구원, 1996. 9.

이대규, 『주요국의 증권회사 적정자기자본규제』, 『주식』, 한국증권거래소, 1993. 12.

曺琮和, 『金融監督規制의 現況과 對應方案－資本適正性을 中心으로－』, KIEP 정책자료 94－19,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4. 12.

증권감독원, 『증권회사 자기자본 관리제도 도입방안－새로운 재무건전성 감독틀』, 1996. 9.

증권감독원 지도평가국, 『증권회사 자기자본 관리제도(안)』, 1996. 9.

蔡熙律, 『銀行 自己資本比率規制의 理論과 實際』, KIF金融 PAPER 95－03, 韓國金融研究院, 1995. 12.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감독기획국, 『BIS와 IOSCO의 최저자기자본규제기준에 관한 합의 내용』, 1992. 3.

_____,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 해설』, 1994. 1.

_____, 『金融그룹에 대한 監督方案』, 1996. 1.

大藏省(日本), 『金融機關の貸付債權の流動化等 自己資本比率 向上策について』, 通達資料, 1993. 4.

_____, 『普通銀行の業務運營に關する基本事項について』, 通達資料, 1993. 5.

_____, 『保險業法』, 1996.

_____,『保險業法施行規則』, 1996.

_____,『保險業法施行令』, 1996.

_____,『保險會社の資本, 基金, 準備金等及び通常の豫測を超える危險に相當する額の計算方法等』, 告示資料, 1996. 4.

_____,『銀行法』, 1993.

_____,『銀行法施行令等の規定に基づき大藏大臣が定める事項について』, 通達資料, 1993. 4.

_____,『銀行法第14條の2に定める自己資本比率の基準を定める件』, 告示資料, 1993. 3.

_____,『證券會社の自己資本規制について』, 通達資料, 1992. 7.

_____,『證券會社の自己資本規制に關する省令』, 1995.

梅本 守,『保險業法の改正について』,『金融』, 全國銀行協會聯合會, 1996. 5.

株式會社 ワールド・ヒューマン・リソーシス保險研究チーム,『すべてがよくわかる新保險業法Q&A』,(株)保險毎日新聞社, 1996. 4.

Allen, W. R, "Integrating Credit and Market Risk Management," *The Journal of Lending & Credit Risk Management*, February 1996, pp. 14～46.

Altman, E. I. and I. T. Vanderhoof(eds.), *The Financial Dynamics of the Insurance Industry*, New York University, 1995.

Basle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An Internal Model-Based Approach to Market Risk Capital Requirements," April 1995.

_____, "Basle Capital Accord : Treatment of Potential Exposure for Off-Balance-Sheet Items," April 1995.

_____, "International Convergence of Capital Measurement and Capital Standards," July 1988(as amended to April 1995).

_____, "Planned Supplement to the Capital Accord to Incorporate," April 1995.

_____, "Proposal to Issue a Supplement to the Basle Capital Accord to Cover Market Risks," April 1995.

_____, "Amendment to the Capital Accord to Incorporate Market Risks," January 1996.

_____, "Overview of the Amendment to the Capital Accord to Incorporate Market Risks," January 1996.

Berger, A. N., R. J. Herring and G. P. Szegö , "The Role of Capital in Financial Institutions,"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Vol. 19, No. 3－4, June 1995, pp. 393～460.

Besanko, D. and G. Kanatas, "The Regulation of Bank Capital : Do Capital Standards Promote Bank Safety?," *Regulation of Bank Capital*, Academic Press Inc., 1996, pp. 160～183.

Boot, A. W. A. and A. V. Thakor, "Off－Balance Sheet Liabilities, Deposit Insurance and Capital Regulation,"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Vol. 15, Elsevier Science Publishers B.V. (North－Holland), 1991, pp. 825～846.

Bori, C. E. V. and R. Filosa, "The Changing Borders of Banking : Trends and Implications," *BIS Economic Papers*, No. 43,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December 1994.

Committee on Banking Regulations and Supervisory Practices, "International Convergence of Capital Measurement and Capital Standards," July 1988.

Cordell, L. R. and K. K. King, "A Market Evaluation of the Risk－Based Capital Standards for the U.S. Financial System,"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Vol. 19, No. 3－4, June

1995, pp. 531～562.

Cummins, J. D., S. E. Harrington and R. Klein, "Insolvency Experience, Risk－Based Capital and Prompt Corrective Action in Property－Liability Insurance,"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Vol. 19, No. 3－4, June 1995, pp. 511～528.

Dale, R., *Risk and Regulation in Global Securities Markets*, John Wiley & Sons Ltd., 1996.

Egan, M., J. Rushbrooke and N. Lockett, *EC Financial Services Regulation*, London : Chancery Law Publishing, 1994.

Giddy, I. H.,『글로벌時代의 國際財務戰略』, 朴淳豊・朴東元・郭大煥(共譯) 서울 : 經文社, 1994.

Herring, R. J. and E. L. Robert, *Financial Regulation in the Global Economy*, Washington, D. C. : The Brookings Institute, 1995.

IOSCO, "The Implications for Securities Regulators of the Increased Use of Value at Risk Models by Securities Firms," July 1995.

Jagiani, J., A. Saunders and G. T. Udell, "The Effect of Bank Capital Requirements on Bank Off－Balance Sheet Financial Innovations,"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Vol. 19, No. 3－4, June 1995, pp. 647～658.

Jamroz, M. P., "The Net Capital Rule," *The Business Lawyer*, Vol. 47, May 1992, pp. 863～902.

John, K., A. Saunders and L. W. Senbet, "Perspectives on Bank Capital Regulation and Managerial Compensation,"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Vol. 19, No. 3－4, June 1995, pp. 735～737.

Jones, D. S. and K. K. King, "The Implementation of Prompt Corrective Action : An Assessment," *Journal of Banking and Fi-*

nance, Vol. 19, No. 3－4, June 1995, pp. 491～510.

Kane, E. J., "Three Paradigms for the Role of Capitalization Requirements in Insured Financial Institutions,"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Vol. 19, No. 3－4, June 1995, pp. 431～460.

Kaufman, G. G., "FDICIA and Bank Capital,"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Vol. 19, No. 3－4, June 1995, pp. 721～722.

Maisel, S. J.(ed.), *Risk and Capital Adequacy in Commercial Bank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1.

Merton, R. C., "Financial Innovation and the Management and Regula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Vol. 19, No. 3－4, June 1995, pp. 461～482.

Miller, M. H., "Do the M&M Propositions Apply to Banks?,"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Vol. 19, No. 3－4, June 1995, pp. 483～490.

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1996 NAIC Life Risk－Based Capital Report Including Overview and Instructions for Companies," *Risk－Based Capital Life*, August 1996.

_____, "1996 NAIC Property and Casualty Risk－Based Capital Report Including Overview and Instructions for Companies," *Risk－Based Capital Property and Casualty*, August 1996.

Norton, J. J., Chia－Jui Cheng and I. Fletcher, "International Banking Regulation and Supervision : Change and Transformation in the 1990s," *International Banking and Finance Law*, Vol. 1, 1994.

Peek, J. and Rosengren, "Bank Regulation and the Credit Crunch,"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Vol. 19, No. 3－4,

June 1995, pp. 679~692.

Reinicke, W. H., *Banking, Politics and Global Finance : American Commercial Banks and Regulatory Change, 1980-1990*, Edward Elgar, 1995.

Steinig, S. and Paul Kolkman, *Report of the Industry Advisory Committee to the Life Risk Based Capital Working Group*, November 1991.

Szegö , G. P., "Risk-based Capital in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Vol. 19, No. 3-4, June 1995, pp. 727~729.

Thakor, A. V. and P. F. Wilson, "Capital Requirements, Loan Renegotiation and the Borrower's Choice of Financing Source,"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Vol. 19, No. 3-4, June 1995, pp. 693~712.

Wall, L. D. and D. R. Peterson, "Bank Holding Company Capital Targets in the Early 1990s : The Regulators versus the Markets,"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Vol. 19, No. 3-4, June 1995, pp. 563~574.

〈국문요약〉

우리나라와 BIS, 美國 및 日本의 金融機關에 대한 資本規制

崔長鳳 · 賈坰洙

資本規制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여 금융기관의 도산을 방지하는 효과를 갖는 반면 시장규율에 의한 필요자본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자금조달비용을 높임으로써 결국 금융기능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國際決濟銀行(BIS)은 신용위험 및 시장위험을 감안한 위험가중자산의 8%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게 하는 자본규제를 제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1992년 자체적으로 BIS기준 자본규제가 도입되어 시행중에 있으며 또한 證券會社를 비롯한 保險會社, 投資信託會社 등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자본규제가 실시되고 있다.

美國의 경우 은행은 單純資本比率(capital-assets ratio)規制와 危險加重資本比率(risk-based capital ratio)規制 등 두 가지 자본규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증권회사는 순자본규칙(net capital rule)에 의한 자본규제 그리고 보험회사는 위험가중자본규제가 실시되고 있다.

日本의 경우 은행은 국제통일기준 또는 국내기준의 자기자본규

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증권회사는 종합적인 재무안정상태에 관한 자본규제가 실시되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도 지급여력(solvency margin)에 따른 자본규제가 실시되고 있다.

금융의 특성상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가 완전히 폐지될 수는 없으므로 경쟁을 지양하는 金融規制는 완화되어야 하는 반면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해 健全性 規制는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점차 금융기관간의 엄격한 업무구분이 퇴색됨에 따라 금융기관 상호간 공정한 경쟁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될 통일된 資本規制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Regulations on Capital Standards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Korea, BIS, US and Japan

Choi, Jang Bong and Kyung Soo Ka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urrent capital regulations on the financial institutions of Korea, BIS, US and Japan. The capital regulation aims to protect financial institutions from bankruptcy. On the while, if this regulation is too rigid, it may bring about the devalua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as a result it may hinder the role of financial institutions by increasing financial cost.

From this viewpoint, the BIS introduced a new capital regulation which manages banks in the member countries to hold at least 8% of risk-based capital.

In Korea, the capital regulation system of BIS has been brought into effect on bank industry. There are also the capital regulations on security, insurance and other financial industries.

In US, the bank industry is regulated by the capital-assets ratio and risk-based capital ratio; the security industry, net capital rule; and the insurance industry, risk-based capital regulation.

In Japan, capital regulation reflecting the international or domes-

tic is levied upon the bank industry. The security industry has the duty to follow the regulation upon financial safety. The insurance industry is regulated by the solvency margin.